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보고서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30.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임성택

변호사 운영규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박영주

미국변호사 민유나

목 차

I. 서 론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4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4
II.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6
1. 개 관	6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문헌	6
3. 박지영의 문헌	7
III.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경과	9
1. 개 관	9
2.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1999년~2000년 4월)	9
3.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의 개선 작업의 개시(2000년 5월)	10
4. 장애인 보험계약 심사기준의 완화(2000년 9월 4일)	11
5. 장애인 전용상품의 개발(2001년 2월)	15
6. 상법 제732조의 개정 건의 등(2000년 10월 이후)	16
IV. 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 및 관련 법령	19
1. 개 관	19
2. 미국의 보험 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 사례	20
3. ‘ADA’의 관련 내용	21
가. ‘ADA’의 입법취지 및 목적	21

나. 보험서비스 제공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	23
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에서의 차별금지	25
라. 몇 가지 쟁점	27
4. 영국 'DDA'에서의 보험차별 관련 규정	29

V. 관련 법 및 정책 고찰

1. 개 괄	33
2.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33
가. 평등권의 보호와 차별 금지의 원칙	33
나. 계약자유와 원칙과의 관계	34
다.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35
라. 합리적 근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36
마.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37
3. 상법	38
가.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	38
나. 상해보험에의 적용 여부	39
다. 단체보험에의 적용 여부	40
라.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례	40
마. 상법 제732조의 위헌 여부	42
4. 보험업법	44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46
6. 소비자보호법	48
7. 관련 기관의 권한 및 장애인 보험 차별에 관한 정책	48
가. 개 괄	48
나. 보건복지부	49
다. 금융감독원	50
라. 국가인권위원회	52

VI.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현황 조사	53
1. 기본 현황 분석	53
가. 보험회사의 현황	53
나. 보험상품의 현황	53
2.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 조사	54
3.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분석	55
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55
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57
4. 인수지침의 조사·분석	58
가. 개 괄	58
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58
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69
5. 장애인 전용보험의 현황	70
가. 서 설	70
나. 개요 및 주요담보내용	71
다. 판매현황	72
라. 평 가	73
6.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75
가. 개 요	75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76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76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77
마. 보험금 수령	77
바. 기 타	78
사. 소 결	79
7.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	79
가. 개 요	79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80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80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81
마. 장애인 전용보험	82
바. 보험금 지급	82
사. 소 결	82
8.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인식조사	82
가. 개 요	83
나.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83
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용이성	83
라. 장애인의 보험가입 요청시 거절 의향	84
마. 장애인의 보험인수에 대한 회사의 태도	84
바.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인식	84
사. 소 결	85

VII.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서설	86
2. 법적 대안	86
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86
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87
다. 상법 개정의 검토	88
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개정	88
3. 제도적 대안	89
가. 서 설	89
나. 생보협회의 공통 계약심사기준의 개정보완	89
다. 인수지침의 집행 준수, 보험담당자들의 교육 및 의식개선	89
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90
마. 주무관청의 문제	90

VIII. 결 론

91

1. 연구의 제한점	91
2. 연구의 함의	91

첨 부

<자료 1> 일반현황-보험회사 및 상품현황

<자료 2> 인수지침분석

<자료 3> 장애인시설 설문분석 및 설문지

<자료 4> 장애인 설문분석 및 설문지

<자료 5> 보험회사직원의식조사

표 목 차

<표 1> 인수기준 개선내용	11
<표 2> 인수불가 장애등급항목	58
<표 3> 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제한	65
<표 4> 건강진단필요여부	66
<표 5> 주요담보내용	71
<표 6> 장애인전용보험판매실적	72
<표 7>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과의 비교(교보생명상품)	74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나의 친구는 4급 청각장애인인데 듣는 데만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뿐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조그마한 건어물 가게로 생계를 꾸려 가는 이 친구가 암보험에 가입하려 했더니 보험회사에서 거절했다는 것이다. 암보험과 청각장애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아는 의학적 소견으로는 납득이 안 간다. 병원에 물어봐도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대답한다. 보험회사에 따졌더니 장애인은 상해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가 다른 보험조차 가입에 까다로운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또 비장애인이 보험가입 뒤 장애인이 되 보험금을 타려고 하면 일반인보다 훨씬 까다롭고 보험금이 적은 경우도 있다니 한심하다. 보험회사의 장애인 차별 관행을 고쳤으면 한다. (2002년 4월 10일자 “문화일보” 여론마당에 실린 울산시 남구 ‘유일숙’씨의 「보험사, 장애인 가입 차별 관행 왜 못 고치나」 중에서)

이따금 내가 시각장애인이 된 이후 20년을 돌아보는 때가 있다. 그 때마다 처음 시각장애인이 되어 장애인계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중략) 그러나 완전 평등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도 험한 것 같다. 얼마 전 미국에 3개월간 체류할 일이 있어 여행자 의료 보험에 가입하려고 한 적이 있다. 3개월이 짧지 않은 기간이고 미국의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두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보험 회사의 반응은 정말 황당한 것이었다.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은 보호자 없이 혼자 여행할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험상품을 개발한 사람의 생각에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높아 보험 회사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볼 것이 뻔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모양이다. 필자의 입장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우선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하면 비장애인보다 사고율이나 발병률이 높다는 아무런 통계자료나 논리적 근거가 없다. 만약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시각장애인 스스로 혼자 여행하는 것을 삼갈 것이다. 특히나 외국 여행인 경우는 대부분 항공편을 이용하거나 승용차를 얻어 타는 경우이어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대한 노출은 비시각장애인보다 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것은 보험상품 개발자가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하면 위험할 것이라는 편견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그대로 제도화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보험회사는 그렇다 치고 보험업무를 감독하는 보험감독원은 어떻게 이런 장애인 차별 규정을 담은 약관을 허가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권익 옹호를 위해 결성된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런 규정을 철폐하려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 이런 문제는 당장 생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리 사회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도를 마련해 놓는다고 해도 그 근거에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에 대한 동정에 불과하고 그 혜택은 장애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조항은 비단 보험상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면제 혜택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러한 차별 조항을 철폐하고 그러한 차별 조항을 잉태한 선입견을 없애는 일이 시각장애인의 복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발전된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인 차별제도가 발견될 때마다 시각 장애인연합회는 물론 모든 시각장애인이 합심하여 그 제도의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2002년 1월 28일자 “주간 한맹뉴스”에 실린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임장순씨의 칼럼 「장애인 차별 아직도 곳곳에」 중에서)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글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한다. ‘생활의 편리’라는 목적을 위해서 허용되는 이러한 위험은, 그러나 아직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언제든지 장애인으로 만들 현실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성원들을 모두 현실적이거나 또는 잠재적인 장애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위험사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불행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이다. 즉,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한 다수의 경제주체가 ‘대수의 법칙’이라는 확률계산을 통하여 합리적인 분담금을 각출하여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두었다가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입었을 때 그 공동기금으로부터 보험금 기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상의 불이익을 보전 받아 삶을 유지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보험은 위험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안전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장애인은 현대사회의 위험요소가 현실적으로 발현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장애인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해 등의 요인으로 인해 후발적으로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들에 대한 생존보장, 생활보호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하여 국가, 사회가 각종의 정책으로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생존보장, 생활보호 책임을 사회에서 온전히 부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보험’(私保險, 이하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가 사회정책 또는 경제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운영하는 ‘공보험’과 구별하여 순전히 사경제적 입장에서 운영되는 보험을 ‘사보험’ 또는 ‘민간보험’이라고 한다)이다.

이처럼 장애인들도 보험을 통해 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민간 보험 회사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보상의 각 단계에서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었다. 즉 그 동안 사보험을 취급하는 민간 보험회사들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거나 특약의 가입을 배제하고, 가입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고, 보험계약의 중도에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있었으며, 보상단계에서도 장애인은 일반인에 비하여 과실은 높게, 일실수익은 낮게 평가하여 보상금을 적게 책정하는 불이익을 주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00년 이후 장애인의 보험가입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왔고, 민간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위와 같은 방향으로 보험업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장애인의 보험가입기준에서 지금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을 만드는 것도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의 차별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보험회사들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을 비롯한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나아가 사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기준, 정책적·법적 대안을 모색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된 진정사건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세우고,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이다.

3.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

석하고, 보험상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따른 개선의 경위를 살펴보며, 미국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보험차별사례 및 관련 법령이 어떠한지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보험 차별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을 알아본다.

그리고 국내 주요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손해보험 및 인보험)과 관련된 약관 및 인수지침을 분석, 비교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만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 차별이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시도하여 본다. 또한 국내 주요보험회사들의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이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한편 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에서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와 보험회사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관련 보험업무처리의 현실과 관련 업무처리자들의 의식상황을 살펴본다. 이상의 검토에 기초하여 보험에서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한 정책적·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하여 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1. 개 괄

민간보험상의 장애인 차별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작성한 「소비자로서의 장애우의 권리 - 장애우 보험가입차별사례를 중심으로」¹⁾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의 사고시 손해배상에서의 기왕증 참작과 관련하여 ‘박지영’의 「노동능력상실을 산정시 기왕증 참작의 문제 - 장애인의 경우를 중심으로」²⁾가 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문헌

본 문헌에서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사례에 대한 신고접수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보험회사의 인수지침 분석을 통하여 사보험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정리분석하고 있다. 우선 본 문헌에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단지 수혜적 또는 시혜적 급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장애인과 동일한 소비자로서 파악하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들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그 대표적인 예가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의 보험차별 사례를 접수한 결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① 장애인들은 “가입단계”에서는 동종의 위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일반인들에 비하여 높은 보험료, 신체검사, 선택계약사항의 배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② “보험계약 유지단계”에서는 장애발생을 이유로 중도해지를 당하거나, 장

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1999년 4월경부터 장애인의 보험차별사례를 접수받고, 서울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처음 작성한 「사보험에서의 장애우의 위상과 전망」을 보완 정리한 문헌이 본 문헌인바, 작성시기는 2001년 초순경으로 추측된다.

2) 사법연수원 2003년도 수료논문으로 아직 미발행되어, 여기서는 초고를 참고하였다.

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으며, ③ “보험보상단계”에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과실은 높게, 보상금은 낮게 인정되며,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가동능력을 턱없이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 또는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서 상해보험과 같은 인보험의 경우에는 장애인시설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예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장애 관련 시설들은 야외학습이나 견학 등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편법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한다.

나아가 본 문헌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보험회사 한 곳의 보험인수 지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장애의 유형에 따라 가입한도금액이 정당한 근거 없이 제한되는 점, 질병과 무관한 장애의 경우에도 질병입원특약과 같은 선택계약이 배제되고 있는 점,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3. 박지영의 문헌

본 문헌에서는 장애인이 교통사고 기타의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음에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장애의 부위 및 정도와는 무관한 사고에 대하여도 장애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실수익이 낮게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즉 장애인이 원고가 된 손해배상소송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장애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당연히 기왕증으로서 손해의 발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그 기여도의 산정 또한 재량으로 참작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신체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상당수는 당해 사고 발생시까지 이미 장애의 상태가 안정화된 경우가 많아서 당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기왕의 장애가 무관계한 경우들이 많고, 정신적 피해를 가진 피해자의 모든 경우는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장애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기여했을 경우란 거의 없다는 점을 본문헌은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사고의 피해자인 경우, 기왕의 장애가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예단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상액을 낮게 책정하고, 법원도 막연히 기왕증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장애가 이와 같이 기왕증으로서 노동능력상실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참작될 뿐만 아니라, 노동능력을 저평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여 결국 장애는 이중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Ⅲ.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경과

1. 개 괄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에서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함에 있어서 차별적인 기준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전용상품을 개발·시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수지침을 개선하였고, 몇몇 보험회사들이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여 본다.

2.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1999년 ~ 2000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999년 4월경부터 장애인 관련 각종 신문 등을 통해 “보험가입 차별사례를 받습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를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6월부터는 장애인 단체보험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민간보험에서 장애인들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송원고들을 모집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0년 4월경 전주의 특수학교 교사가 신규임용 교직원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언어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었고³⁾, 이 사

3) 2000년 4월 20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주의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씨는 D생명의 ‘한울타리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청각장애인이어서 휴일에 사고가 나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휴일특약에는 가입할 수 없다면서, 회사의 인수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

실이 ‘장애인의 날’인 2000년 4월 20일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다. 위 장애인의 부인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안이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각종 언론을 통하여 크게 문제가 되자,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가입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3.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의 개선작업 개시(2000년 5월)

금융감독원 및 생명보험협회는 2000년 5월 이후 보험가입 기준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상품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⁴⁾.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조치의 배경으로 ① 보험모집인이 계약심사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은 심사과정에서 거절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여 보험모집에 소극적인 점, ② 정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의 경우에도 장애자협회 등을 통한 민원제기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이유로 보험회사들이 보험인수를 회피하는 점, ③ 보험회사들은 장애인의 경우 역선택 위험이 상존하고, 장애인에 대한 실적 위험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손익관리가 어려워 장애인을 고객으로 유치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장애인 전용상품 개발을 회피하는 점, ④ 일반보험상품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되는 점, ⑤ 장애인들의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필요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와 모집인의 보험인수(모집)기피, 장애인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현실은 반대로 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금융감독원은 2000년 5월 4일경 장애인 보험가입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200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생명보험협회의 주관 하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는바⁵⁾, 첫째는 보험계약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인 전용상

기를 들었다. 또한 이씨는 S생명의 신규임용 교직원을 위한 ‘직장인플러스보험’에 가입하였다 일방적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 보험을 취급했던 보험회사의 직원은 “청각장애인이 선생님일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한 게 실수”라며, “이씨가 장애인인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장애인 보험과 관련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2년 12월 16일 회신하였는바, 이하의 내용은 위 회신내용에 기초하여 정리되었다.

5) 생보험회, 보험개발원, 업계 관계자(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로 작업반이 구성되었고, 계

품을 판매하는 것이었다.

4. 장애인 보험계약 심사기준의 완화(2000년 9월 4일)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을 마련하여(2000년 9월 4일 시행), 각 보험회사별 계약인수기준 시스템 구축 및 모집채널 교육을 실시하고, 2000년 10월 신계약부터 위 인수기준을 적용하였다. 생명보험협회는 위 심사기준 시행의 배경을 “지체장애인, 시·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받거나 차별화하는 사항을 심사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기준을 설정하고, 장애인이 일반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가입조건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 인수기준을 일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함”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통계약심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계약인수 불가대상을 한정하여 그 동안 장애등급분류표상 인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71종의 장애항목 중 57개 항목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가’에서 ‘정상’으로 완화되었다. 다만 9개 항목은 여전히 인수불가 항목이며, 추간판탈출증 관련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계약사정기준표상의 기준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르되 치료중이거나 수술 전 피보험자는 일정시간 경과 후 상태가 안정화된 후 Rating을 통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표 1> 인수기준 개선내용

등급	신 체 장 해	종 전	개 선
제1급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불가	불가
	중추신경계 또는 장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약인수파트 및 상품개발파트로 작업반을 이원화하여 계약인수파트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인수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상품개발파트는 장애인 전용보험상품 개발작업에 착수하였다.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제2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제한	정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제3급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관탈출증은 제외)	불가	불가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 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	정상
제4급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불가	불가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불가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불가	불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관탈출증은 제외)	불가	제한
	고도의 추간관탈출증	불가	제한
제5급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제한	정상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제한	제한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불가	제한
제6급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한	정상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제한	정상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한	정상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제한	정상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제한	정상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제한	정상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불가	제한

둘째, 장애 원인별로 인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장애원인이 재해인 경우 정상체와 동일하게 가입(한도)제한을 철폐하고, 장애원인이 질병인 경우 계약사정기준표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현증에 대한 진단과 Rating을 통해 인수(진단을 통하여 장애원인의 되는 부위에 대하여 부위부 담보 및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의 특약을 적용할 수 있음)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이러한 가입기준의 완화에 따라 2000년 10월부터 2001년 1월까지의 사이에 장애인의 보험가입건수는 모두 12,000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은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보

협가입 차별이 일정 정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개선기준안이 지켜지느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 중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수불가항목을 유보한 개선조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5. 장애인 전용상품의 개발(2001년 2월)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상이자 포함)의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경제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장애인 전용상품 개발을 독려하였고, 이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2001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당초 장애인 전용보험은 보험회사가 손실을 우려하여 단독으로 개발·판매하는 것을 기피함에 따라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보다 보험가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율을 사용하면서 예정이율과 사업비는 다른 상품보다 저렴하도록 낮게 책정하여 23개 생보사가 공동으로 개발·판매하도록 할 예정으로 2000년 12월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행위 저촉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의 공동상품개발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해 옴에 따라(2001년 3월 9일)⁶⁾, 부득이 이들 3개

6) 보험매일 2001년 2월 8일자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은 7일 ‘생명보험협회에서 제출한 장애인 전용 공동상품은 공정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실질적 담합행위’라며 인가불허 방침을 내비쳤다고 한다. 위 보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이 상품은 역마진이 날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누적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상품을 팔겠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상품으로 인해 적자가 커지게 되면 결국 보험사들은 손실보전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공동상품이기 때문에 요율 인상 자체가 용이하다는 게 공정위측 인가불허 방침의 속내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장애인전용상품은 당초 판매마진보다는 보험산업 이미지제고를 위해 복지차원에서 개발한 것’이라며 ‘때문에 개별경쟁판매가 아닌 공동판매로 인가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일반인보다 위험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인수를 꺼려왔던 점을 감안,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생보협회가 상품인가를 신청한지 2개월이 됐는데도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

사만 단독으로 상품을 개발·판매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후 럭키생명은 2002년 7월 ‘장애인 전용 무배당은사랑미래보장보험’ 상품을 판매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기존 보장성 보험료(70만원한도) 이외에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세제관련법규가 개정되었다(2000년 12월말).

이러한 장애인 전용상품의 도입에 대하여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과 “일반 보험상품의 장애인 가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통합에 반대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⁷⁾으로 반응이 나뉘었다.

6. 상법 제732조의 개정 건의 등(2000년 10월 이후)

장애인 보험가입 인수기준이 개선되고, 장애인 전용상품이 마련된 이후에도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장애인단체인 ‘장애인미래연대’는 2000년 10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제도 개선 건의를 하였다⁸⁾. 장애인미래연대는 위 건의에서 장애인의 보험가입 인수기준을 개선하려고 한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히 공정위가 이상품의 공동판매를 금지할 경우 장애인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7) 복지연합신문 2000년 9월 4일자 기사를 보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과장은 금감원이 내놓은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의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금감원이 재경부와 협의중이라는 보험료 소득공제와 증여세 면제가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 상품의 가입장벽을 없애고 난 후 그러한 전용보험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인영씨도 현재 내놓은 장애인 전용보험이 다른 상품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 세금공제를 명목으로 전용보험까지 개발할 필요는 크게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각 생명보험사에서 상품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을 기회로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8) 장애인미래연대(회장 이성규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2000년 10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 참조(문서번호 : 장미련 2000-001)

수 있지만, △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항구적으로 제한하는 차별적 제약 법령이라고 주장하고, △ 씹어먹는 기능, 흉·복부 장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보험인수의 거절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장애인을 단순히 무능력자로 전제한 불평등한 조건이고(중추신경계, 척추장애를 입은 장애인이 경제생활을 왕성하게 할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것은 부당함), △ 장애의 원인이 재해이고 다른 질병이 있거나, 질병 자체가 장애의 원인인 경우 질병 상태에 따라서 가입조건을 판별하도록 개선방침을 정하였으나, 실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장애인들은 질병을 가진 진행성 장애라기보다는 재해 또는 원인미상에 의하여 발생된 장애가 이미 고착된 상태로서 장애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가입이 제한되고 있으며, △ 인보험 외에 화재보험에서도 화재시 긴급피난이 어려운 장애인을 입소시킨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곤란한 실정이라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우선 상법 제732조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질병에 의해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자’로 개정하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화재보험의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00년 11월 9일 상법 제732조는 자기판단능력이나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을 허용할 경우 보험금 수취를 위한 피보험자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항의 개정은 곤란하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특수건물의 범위확대는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합치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고 이 문제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다⁹⁾.

한편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는 2001년 11월 8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장애인

9) 금융감독원의 민원에 대한 회신(문서번호 : 보감상 9211-00137)

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따른 규제와 제한조치를 철폐하여 달라”는 대정부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이 건의문에서는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은 실패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 장애인에게 모든 보험상품의 문을 개방하고, △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들에게도 부모가 대리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 장애인이 위험부담이 높다고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의문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전달받은 생명보험협회는 △ 중증장애인의 가입제한은 상법상의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가입금액에 따라 가격수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다른 비장애인 상품과 비교할 경우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회사비용으로 공제하는 사업비는 오히려 적게 책정하였으며 보험금 적립을 위한 예정이율은 높게 책정하여 비장애인 상품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하였고(2002년 1월 현재 K사의 예정이율을 보면 비장애인 보험상품은 5%이고 장애인 전용상품은 7%인데 이렇게 2%의 이율차이는 보험료 20~30%의 인하효과가 있음), △ 장애의 원인이 질병으로 인한 경우 후유증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빈도도 높다고 판단하여 계약심사시 이를 참고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계약인수시 가입한도를 조정하거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IV. 외국의 장애인 보험차별 실태 및 관련 법령

1. 개 괄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총 인구의 21%인 5천 4백만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¹⁰⁾, 매년 5명 중 1명 꼴로 65세 이전까지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¹¹⁾.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일찍이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이하 ‘ADA’라고 함)을, 영국은 장애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f 1995, 이하 ‘DDA’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ADA’ 및 ‘DDA’는 장애인들이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차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험회사는 보험업의 특성상 위험요소가 반영된 합리적인 보험 통계자료(reasonable actuarial information)에 기초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차이(differentiation)를 둘 수는 있지만 차별(discrimination)은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ADA’ 및 ‘DDA’는 보험은 개인이 사회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애인들에게 동등한 보험가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보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사례와 ‘ADA’의 입법취지 및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관련 조항의 내용 등을 살펴보고, 영국의 ‘DDA’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McNeil, J.M. (1997) Americans With Disabilities: 1994-95, U.S. Census Current Population Report, PD 70-91,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Commerce.

11) Id.

2. 미국의 보험 서비스 관련 장애인 차별 사례

미국에서도 보험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문제로 되고 있어, 그 일부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심지어 소송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인터넷 뉴스그룹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캘리포니아의 'Ronald Fredette'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핸드컨트롤을 이용해 18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해 왔다. 그러나 장애인용으로 변형된 차량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자동차 보험이 해지되었다¹²⁾.

② 워싱턴 주거공정위원회(The Fair Housing Council of Greater Washington)는 정신장애인들의 집단거주주택을 대상으로 적정한 가격에 보험을 판매하는 것을 거부한 보험회사 4군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¹³⁾.

③ 'Parker'는 'Schering-Plough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MetLife 보험사의 장기 장애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험 정책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24개월로 보험수당을 한정했지만, 신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65살이 될 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arker'가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장애로 판명이 나자 회사는 24개월 후 보험 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Parker'는 회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¹⁴⁾. 그런데 테네시주 서부 연방지역법원과 그 상급법원은 보험혜택이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를 차이를 두고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ADA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¹⁵⁾. 이 문제는 아직도 많은 상충된

12) ACLU of Southern California Files Lawsuit For Disabled Man Denied Auto Insurance, July 7, 1997 <www.aclu.org> (accessed on Oct. 17, 2002).

13) Michael Yared, Four Insurers Accused of Bias Against Disabled Housing Group from Newsgroup <bit.listserv.ada-law> (accessed on Oct. 31, 2002).

14) 121 F.3d 1006 (6th Cir. 1997).

15) Id.

판결문이 존재하고 있고 법원이나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이다.

④ 2000년 2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변호사 ‘Howard Chabner’는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요구한 ‘United of Omaha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¹⁶⁾.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9차 순회법원은 ADA는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요구하지만 그 보험조건의 계약 내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제9차 연방순회법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의 장애와 관련된 보험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건전한 보험통계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불공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밖에 다른 많은 법원들이 ADA가 보험조건의 계약 내용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⑤ ‘Pallozzi’ 부부는 ‘Allstate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들의 정신 장애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고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요구한 부부에게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¹⁷⁾. 제2차 연방순회법원은 부부의 정신장애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행위는 ‘ADA’ 제3장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3. ‘ADA’의 관련 내용

가. ‘ADA’의 입법취지 및 목적

1990년에 제정된 ‘ADA’는 1964년에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을 장애인 영역에 확대·적용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권리장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DA’의 입법과정에서 미국의 국회는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다¹⁸⁾. 첫째, 1990년 입법 당시만 해도 4천 3백만명 정도의

16) 225 F.3d 1042 (9th Cir. 2000).

17) 198 F.3d 28 (2nd Cir. 2000).

미국인이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그 숫자는 인구가 노령화될수록 더욱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역사적으로 사회는 장애인들을 고립시키고 격리시켜왔고 어느 정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형태의 차별은 여전히 심각하고 만연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셋째,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은 고용, 주거, 공공편의시설, 교육, 교통, 의사소통, 휴양, 공공단체, 건강 서비스, 투표, 공공시설에의 접근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넷째, 인종, 피부색, 성별, 국적, 종교 또는 나이 등에 의해 차별을 받아온 개인들과는 달리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온 사람들은 그러한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구제책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다섯째, 장애인들은 의도적으로 완전히 배제당하거나, 건축물, 교통 그리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별받는 것, 과보호적인 규정과 정책, 현존하는 시설과 관행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 장애인들을 제외시키는 자격 기준들, 격리, 더 적은 서비스의 제공, 프로그램, 활동, 혜택, 직업 또는 다른 기회들로부터의 좌천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받고 있었다. 여섯째, 인구조사 자료, 전국 여론조사, 다른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이 사회에 열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사회, 직업, 경제,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심각하게 차별 받고 있음이 드러났고, 일곱째 장애인들은 분리되고 고립된 집단으로 규제와 제약의 대상이 되어왔고, 의도적으로 역사의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받아왔으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무력한 단체로 전락해왔다. 여덟째, 미 국회는 이러한 차별이 장애인의 장애적 특성들에 기반한 것이고 그러한 장애인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형화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홉째, 불공평하고 불필요한 차별과 편견은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와, 이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며 장애인들의 비독립성과 비생산성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지출에 몇 십억 달러를 낭비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고, 이에 국회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 완전한 참여, 독립적인 생활, 경제적 자생 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가의 목표라고 보았다.

18) 42 U.S.C. 12101 (a) (1994).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1)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제거를 위해 분명하고 포괄적인 국가적 위임을 제공하고, (2) 장애인 차별에 대한 분명하고, 강력하며, 일관되고, 집행 가능한 기준들을 제공하며, (3) 연방 정부가 장애인을 대신해 이 장에서 설립된 기준을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고 (4)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대면하는 차별의 주요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업을 규제하고 미 헌법 수정 제14조의 집행권한을 포함한 의회의 권한을 발동한다는 취지로, 미 국회는 ‘ADA’를 제정하게 되었다¹⁹⁾.

나. 보험서비스 제공상의 장애인 차별 금지

‘ADA’ 제3장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공공 편의시설, 일정 종류의 교육과정과 교통수단, 상업시설 등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배제, 분리 및 불평등취급 등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데, 위 시설에는 보험회사 사무소와 같은 서비스 제공장소도 포함된다. 즉 보험회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어떠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서비스를 완전하고 동등하고 누릴 권리에 있어서, 장애를 근거로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i) 참여의 거부 -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장애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 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어떤 장소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의 혜택을 누리거나 참여하는 기회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다.

(ii) 동등하지 않은 혜택 부여 -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장애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 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어떤 장소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지 않게 제공하거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iii) 분리된 혜택의 부여 -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을 장애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또는 계약, 허가 등의 방식을 통해 어떤 장소의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의 혜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달리하거나, 분리하여 제공하거나 참

19) Id. 12101 (b).

여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그런 행동이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 또는 다른 기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때는 예외이다.

(iv)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 - (i)에서 (iii)에 걸친 조항에 한해서,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라는 용어는 계약, 허가, 또는 다른 유사한 계약관계를 체결한 공공 시설의 고객이나 손님을 말한다.

그밖에도 특히 금지되는 차별행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i) 장애를 가진 개인 또는 그러한 개인의 집단이 완전하고 동등하게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를 누리는데 있어서 가려지거나 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는 자격기준이 적용되는 것. 다만 그러한 기준이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임이 입증될 수 있을 때는 예외이다.

(ii)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를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정책, 관행, 절차 등을 적절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을 때. 다만 서비스 제공자나 제공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예외이다.

(iii) 장애를 가진 어떤 개인도 보조기구나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제외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격리되거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게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다만 서비스 제공기관이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편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거나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게 됨을 입증할 수 있을 때는 예외이다.

ADA 제3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연방법원에 제소하여 각종 시정명령, 금지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고²⁰⁾, 법원은 중요한 사건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소송참여를 허가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시설개선, 보조장비 또는 보조서비스 제공, 정책의 수정, 대체적 방법의 제공 등 관

20) 42 U.S.C. 12188 (Supp. III 1991).

계 규정상 적합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²¹⁾²²⁾.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쇼핑 센터 건축계획에 장애인들을 위한 적절한 접근방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알아냈다면 이 조항 하에, 그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구제책은 Civil Rights Act of 1964에 나와있는 구제책들을 포함하고²³⁾, 가처분도 허용되며²⁴⁾,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 관련 비용도 변상 받을 수 있다²⁵⁾.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위반사실을 조사하고²⁶⁾, 주기적으로 동법의 준수사항을 점검하고²⁷⁾, 위반사실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거나 차별사실이 존재하고 중요한 쟁점이 제기된 때에는 직접 연방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다.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제공하는 보험에서의 차별금지

‘ADA’ 제1장은 장애인이 피용자로서 사용자로부터 보험을 임금 외의 수단으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대부분 사용자는 외부의 보험회사 상품을 피용자를 대상으로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스폰서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상품의 내용이 장애인인 피용자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그렇지 않은 다른 피용자에 비하여 차별을 할 경우 장애인은 ‘ADA’ 제1장에 의거하여 그러한 상품을 공급하도록 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장에 의거하여 그 보험회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인 원고는 사용자가 그러한 차별적인 보험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고 비차별적인 보험상품을 공급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미래에 있을 금

21) 42 U.S.C. 12188(b)(2) (Supp. III 1991).

22) 28 C.F.R. 36.504(a)(2), (c) (1993).

23) Id. 12188(a)(1).

24) 42 U.S.C. 12188(a)(2) (1990).

25) 28 C.F.R. 36.505 (1993).

26) 42 U.S.C. 12188 (Supp. III 1991).

27) 28 C.F.R. 36.503 (1993).

전손실(future pecuniary loss), 정신적 피해(pain and suffering)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사용자가 악의(malice)나 무모할 정도의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으로 그러한 차별적인 보함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추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요구할 수 있다²⁸⁾.

‘ADA’ 제1장은 사용자가 구직신청절차나 고용결정, 승진, 해고, 피용자 급여, 업무 트레이닝 및 모든 고용의 조건 및 특권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²⁹⁾. 나아가 장애를 가진 피용자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관계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임금 외의 수당은 그러한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³¹⁾.

ADA 제1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용자가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장애인이 사용자의 사업장에 취직하기 위해 입사를 신청하려는 사람(job applicant)이거나 또는 사용자의 피용자(employee)여야 한다³²⁾.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나 자원 봉사자(volunteer)는 해당되지 않는다³³⁾. 예컨대 사용자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는 ADA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³⁴⁾. 퇴사한 피용자가 전 사용자를 상대로 ADA 제1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미국 법원들이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듯하다. 제11 연방순회 법원에서 있었던 *Gonzales v. Garner Food Services, Inc.*³⁵⁾ 사건에서는 ‘ADA’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사업장에 취직

28) 42 U.S.C. 1981a (Supp. III 1991).

29) 42 U.S.C. 12112 (1994).

30) Id. 12112(b)(2).

31) Id.

32) Id. 12112(a).

33) See e.g., *Robinson v. Bankers Life & Cas. Co.*, 899 F. Supp. 848, 849 (D.N.H. 1995) (원고가 피용자(employee)가 아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이라는 사실이 계약서상에 분명히 있는 점에 미루어, 원고는 피고(사용자)에게, ADA 제1장에 의거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see e.g., *Haavistola v. Community Fire Co.*, 839 F. Supp. 372, 373 (D. Md. 1994) (원고는 자원 봉사 자격의 소방대원임으로 제1장의 피용자라 볼 수 없다).

34) *Gonzalez*, 7 NDLR P 136.

하기 위해 입사를 신청하려는 사람(job applicant)이거나 또는 사용주의 피용자(employee)만이 사용주에 대한 소송할 권리가 있지 이미 전직한 피용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북 일리노이주 연방지역법원은 Northen v. City of Chicago³⁶⁾ 사건에서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피용의 고용 관계가(employment relationship) 존재했다면 ‘ADA’ 제1장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원고가 현재 피용자일 필요는 없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라. 몇 가지 쟁점

‘ADA’ 501(c)에 의하면, 보험회사들은 각 주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것이 ‘ADA’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닌 한, 위험요소가 반영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즉 보험회사들이 위험요소 분류(classification of risks)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한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보험통계적 원칙(sound actuarial principle)에 입각하여 보험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또는 다른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어떠한 경우가 ‘ADA’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구실인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권해석은 보험상품이 합리적인 보험통계적 원칙(actuarial principle)에 입각하여 제공되는 한 ‘ADA’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구실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³⁷⁾.

‘ADA’ 제1장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고용차별금지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disability-based distinction)을 둔 보험상품이 ① 보험회사가 장애를 기준으로 한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경우, ②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차이나 차별이 정당한 또는 비교 가능한 보험 통계 자료에 기초한 경우, ③ 장애를 기준으

35) 89 F.3d 1523, 1524 (11th Cir. 1996).

36) 841 F. Supp. 234, 234-236 (N.D. Ill. 1993).

37) 어떤 보험 통계자료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래로 개정되지 않은 채로 현재에도 쓰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1930년대에 만들어진 보험통계자료에 의해 현재에도 보험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인 보험통계적인 원칙(sound actuarial principle)에 입각한 것인가, 즉 ‘ADA’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가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로 한 구분을 제거할 경우 그 보험상품이 수익성이 없어지는 경우, ④ 해당 치료가 그 어떠한 이득이나 효과가 없어서 그에 대한 보험혜택을 거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ADA’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 아니라는 지침서를 내놓았다³⁸⁾.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ADA’에 위반되는 차별인가 하는 점이다. ‘ADA’는 보험상품이 장애를 기준으로 하는 구분(disability-based distinction)을 두었을 때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규정짓고 있다. 한편 ‘ADA’에서는 장애를 주요한 생활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저해상태(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that substantially limits a major life activity)로 정의하고 있다. 고용차별금지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조항들이 ① 예를 들어 청각장애, 정신분열증 등 특정장애를 지정한다던가, ② 암질환, 신장병 등 별개의 장애 그룹을 지정한다던가, ③ 주요 생활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모든 상태 등, 장애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보험상품이 장애를 기준으로 구분(disability-based distinction) 되었다고 보고 있다.

장애에 기초한 구분(disability-based distinction)에 있어서 최근 수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에 대해 보험혜택이 차별을 두는 문제이다.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보험 가운데서도 많은 보험상품들이 신체장애자에 비해 정신장애자에게 더 불리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신체장애의 경우 보험금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지만 정신장애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24개월로 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구분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구분은 ‘ADA’가 금지하는 장애에 기초한 구분(disability-based distinction)으로서, 그러한 구분이 합리적인 보험통계자료로 증명되지 않는 한, ‘ADA’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ADA’는 보험회사가 어느 한 장애그룹에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또 다른 장애그룹에게도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종류의 장애에 대해 다른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ADA’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러한 행태가 ‘ADA’를 위반하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법원들은 서로 상충된 의견을 보여왔다. 2000년

38) See EEOC Interim Guidance on Application of ADA to Health Insurance, Daily Lab. Rep. (BNA) No. 109, at E-3 (June 9, 1993).

경의 제2연방 순회법원에서는 ‘ADA’는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의 구별을 규제하지 않고 있고 정신장애를 지체장애보다 차별하고 있는 보험정책이 ‘ADA’에 위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비난의 대상이 된 반면³⁹⁾, 2001년의 제11차 연방순회법원에서는 ‘ADA’는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의 구별과 그 안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고 결정하여⁴⁰⁾, 미국의 법원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 문제는 계속 논쟁과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4. 영국 ‘DDA’에서의 보험차별 관련 규정

영국의 장애차별금지법 ‘DDA’ Part III에서는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상품, 시설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다음과 같이 차별하는 것은 위법하다.

- (a)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또는 제공할 준비가 된 어떤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것;
- (b) 조항 21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이 그러한 서비스의 사용을 불가능하거나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
- (c)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나 방식; 또는
- (d)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나 내용

(2) 이 조항과 조항 20, 21에 한해서는

- (a) 서비스의 제공이라 함은 어떤 상품 또는 편의 시설의 제공도 포함한다;
- (b) 서비스의 제공자라 함은 영국에서, 대중 혹은 대중의 한 부분에게

39) Weyer v.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 198 F.3d 1104, 1116 (9th Cir. 2000).

40) Johnson v. K Mart Corp., 273 F.3d 1035 (11th Cir. 2001).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리고

(c) 서비스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3) 아래는 이 항과 20, 21항에 해당되는 서비스의 예들이다.

(a) 일반인들에게 드나들 수 있도록 허용된 어떤 장소의 사용과 접근;

(b) 통신 수단의 사용과 접근;

(c)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의 사용과 접근;

(d) 호텔, 기숙사 또는 다른 비슷한 시설의 숙박;

(e) 은행, 보험, 양도, 용자, 신용, 재무와 관련한 시설;

(f)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기분전환을 위한 편의시설;

(g) 고용 기관에 의해 제공되거나 Employment and Training Act 1973의 2항 아래 제공되는 시설;

(h) 어떤 직업이나 거래, 지방 관할 또는 다른 공공의 서비스.

(...)

20. (1) 19항에 관해서, 서비스의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

(a) 장애인의 장애와 관련한 이유로, 장애를 가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보다 덜 우호적으로 대할 때; 그리고

(b) 그러한 대우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때.

(2) 19항에 관해서, 서비스의 제공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다.

(a) 21항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그리고

(b)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을 정당화하지 못할 때.

(3) 이 항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그 정당함을 인정한다.

(a) 서비스 제공자의 의견으로 보았을 때, 소구분 (4)항의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될 때; 그리고

(b)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그러한 의견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때.

(4) 조건들은

- (a)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의(장애인을 포함한)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때;
- (b)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이 집행 가능한 계약을 맺거나, 동의 (informed consent)를 하거나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대우가 합리적일 때;
- (c) 19(1)(a)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방법으로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대우는 필요한 때;
- (d) 19(1)(c), (d)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장애인이나 다른 일반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대우가 필요한 때;
- (e) 19(1)(d)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때 차이를 보이는 조건은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더 큰 비용을 안게 됨을 나타낼 때.

- (5) 서비스 제공자가 21 조항에 나와있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생기는 요금 인상은 소구분 (4)(e)항의 목적을 위해 무시되어도 무방하다.

(...)

21. (1)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대중에게 제공하는 또는 제공할 준비가 된 서비스의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이성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만드는 관행, 정책, 절차가 있을 때, 그것이 더 이상의 그러한 효력이 없도록 바꾸는 것은 제공자의 의무이다.

- (2) 물질적 특징(예를 들어, 건물의 디자인이나 설계상 일어나는)이 장애인들로 하여금 그 서비스의 사용을 불가능하거나 이성적으로 사용이 어렵게 만드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닌다.

- (a) 그러한 특징의 제거;
- (b)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변경;

- (c) 그 특징을 피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마련; 혹은
 - (d) 장애인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방안 제공.
- (…)
- (4) 보조 장치나 서비스(예를 들어, 오디오 테이프나 수화 해석기 등의 공급)가
- (a) 장애인들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 (b) 그 서비스의 사용을 더 편리하게 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그런 보조 장치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 (…)
- (6) 이 항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그의 거래, 직업, 사업의 성질을 바꾸거나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7) 이 항은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규정된 한도액 보다 초과하는 지출을 초래하는 어떤 행동도 요구하지 않는다.
- (8) 소구분 (7)항의 규제는 규정된 한도액을 다음과 같은 참조를 따라 계산하도록 한다-
- (a) 서로 다른 사건과 관련해 생겨난 비용의 총액;
 - (b) 규정된 시간;
 - (c) 규정된 설명에 따른 서비스;
 - (d) 규정된 설명에 따른 전제; 혹은
 - (e) 규정된 다른 기준들.

V. 관련 법 및 정책 고찰

1. 개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률로는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상법, 보험업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인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장애인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바, 보건복지부 및 금융감독원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헌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가. 평등권의 보호와 차별 금지의 원칙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4조 제1항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은 이를 구체화하여 제8조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서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여기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병력(病歷)을 이유로 △ 고용(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용자 등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민간보험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서 헌법, 장애인복지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료 등 보험조건을 불리하게 정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나. 계약자유와 원칙과의 관계

평등권과 차별금지의 원칙과 ‘계약자유와 원칙’⁴¹⁾ 사이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 즉 계약자유와 원칙이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체결 자유), 어떠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상대방 체결의 자유),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계약내용 형성 및 방식의 자유) 여부를 당사자 자신이 자기 의사로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원칙에서 보면 민간 보험회사가 장애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41) 우리 헌법재판소는 계약자유와 원칙을 인정하면서, 그 속에는 원칙 없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며,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그러나 이러한 계약자유 원칙도 제한과 한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사적자치의 존중이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극히 존중되어야 할 원칙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타 개인이나 사회공동체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존공영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거나 적어도 유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인된다”고 판시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3제1항, 제31조의2의위헌심판 사건), 우리 대법원도 “계약자유 원칙은 사적소유권 절대 원칙 및 과실책임 원칙과 더불어 근대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나 계약자유 무제한 허용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계약당사자를 부당하게 압박하여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의 체결 또는 그 내용에 간섭할 필요가 생긴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⁴²⁾).

따라서 보험회사의 특정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보험회사는 이른바 ‘계약자유 원칙’을 내세워 항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합리적 차별의 판단기준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하였을 때이다. 만일 장애인에 대하여 차이를 두는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는 평등권 침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2항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될 것이다.

42) 아울러 대법원은 “계약자유 원칙의 제한은 민법의 지배 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바탕 위에서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한도를 외면한 자의적인 제한은 계약자유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국의 헌법학계가 실무에서는 다양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독일의 경우 ① 인간존엄성의 이념에 위반하면 합리적 차별이 아니라는 견해(인간존엄성설), ② 일정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합리적 차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입법목적설)이 주장되고 있다⁴³⁾.

판례법이 중시되는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이 정리되었는데, ① 차별을 통하여 국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단순히 합법, 정당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요불가결한 것이어야 하고(목적의 필요불가결성), ②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선택한 수단으로서의 차별이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야 하며(수단의 직접성), ③ 목적달성에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최소제한성)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형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 6. 26. 결정 91헌가8, 9)⁴⁴⁾.

라. 합리적 근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특정 장애와 해당 보험의 예상되는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또는 위험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의 존부 또는 위험율의 정도에 관하여 누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예를 들어 시각장애인과 여행자보험의 관계에서, 시각장애인

43) 권건보, 『장애인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제55-6쪽 참조.

44)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이 여행 중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 여부에 관한 어떠한 객관적이 자료가 없
어, 보험회사는 위험율이 높다고 주장하고,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위험율이 낮다고
서로 주장하지만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보험
료의 책정에서 위험율이 높은 것을 전제로 행동한다면 이를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지, 즉 평등권 침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차별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그런데 합리적 근거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차별을 행하는 주체(차별행위자)
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1조는 일반적인
차별의 금지를 선언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2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평등권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형식에 따
르면 차별이 존재하는 경우 이는 일응 위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차
별행위를 하는 자가 차별의 근거가 합리적인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합리적 차별로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보험회사가 특정 장애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보험조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행위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마.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따라 사인(私人)인 보험회사가 범한 장애인에 대한 평
등권 침해행위도 우리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장애인복지법은 장
애인을 차별하지 아니할 의무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인에게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보험회사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
로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보험업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뒤
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이 △ 장애를 이유로 학교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78조의 제1호), △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동법 제80조 제1항 제3호)과 비교되어 진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경우 대상시설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 시설주관기관이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23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동법 28조), 과태료 등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동법 제27조)과도 비교된다. 어쨌든 보험회사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보험업법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형사적·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기타의 법률상 행정적, 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보험회사로부터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구제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을 소송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즉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평등권만을 근거로 계약의 성립을 강제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다만, 장애인임을 고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일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러한 해지권 행사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효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상법

가.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무효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종래에는 18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자를 15세 미만자로 연령을 조정하였다). 학설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위와 같은 동의를 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상법 제732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이유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그런데 ‘심신상실자’란 자기의 행위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능력 즉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고, ‘심신미약자’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판단력이 불완전한 자를 말하므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정도 및 경위를 불문하고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 특히 민법상으로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의 경우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 행위능력을 잃게되는바, 상법 제7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치산 선고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나. 상해보험에의 적용 여부

상법 제732조는 상해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법 제739조는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하다.⁴⁵⁾ 이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달리하는 “타인을 위한 상해보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설인 만큼 보험계약자가 상해

45) 다만 양승규 교수는 심신상실자를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양승규, 보험법, 482면).

보험금청구권을 피보험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되고 있다.

다. 단체보험에의 적용 여부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상법 제73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법 제735조의3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하지 않다면 단체의 구성원이 심신미약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법학자들 중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논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3이 명시적으로 상법 제731조의 적용만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732조는 단체보험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단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 동의는 단체의 규약이라는 집단적 동의로 대체되는 것이므로⁴⁶⁾,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상법 제732조는 단체보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판결 사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의 사례이긴 하지만, 상법 제732조의 적용을 완화한

46) 상법 제735조의 3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상법 제735조의 3의 제1항의 입법취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별보험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규약으로써 동의에 갈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른 운용상의 편의를 부여해 주어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구성원들의 복리 증진 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고, 단체보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동의를 집단적 동의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 방법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9년 9월 16일 98헌가6 상법제735조의3제1항위헌제청 사건).

하급심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아래의 판결들은 모두 15세 미만자(또는 개정 전 법률에 의한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연령을 높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고, 나중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다(이러한 사례들은 상법 제732조를 적용할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는 정의관념상 타당하지 아니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단체보장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서의 성질 외에도 저축의 기능을 겸한 보험이고, 보험모집사원이 18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인 것을 알고도 보험모집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연령을 고쳐 기재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함은 신의칙에 반한다(1987. 2. 27. 86가단3308 보험금청구사건 판결 하집1987(1), 292).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일 당시 체결되었더라도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될 경우 그 날짜로 동일한 내용의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사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보험자의 대리인 지위에 있는 영업소장이 피보험자가 당시 만 15세 미만임을 잘 알면서도 생년월일을 소급 기재하고 사후에 이를 정정하도록 적극 권유하여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비록 만 15세가 된 후에 생년월일을 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계약이 피보험자가 만 15세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1997. 12. 26. 97가합22549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수원지법 하집 1997-2, 200).

다만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한 서면동의를 흠결된 사안에 관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결 중 위 하급심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마. 상법 제732조의 위헌 여부

상법 제732조에 근거하여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은 정신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경우 사망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는 생명보험에는 가입이 완전히 봉쇄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생존보험이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는 보험상품(예컨대 상해보험)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그 장애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상법 제732조가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 계약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조항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가 있다⁴⁷⁾.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합헌론과 위헌론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된다.

(1) 합헌론

47)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민원 중에는 보험가입 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후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 등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무려 9경 7조원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한 사안이 있었다. 위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가사 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보험가입 전 피보험자가 정신분열증을 앓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조정결정을 내린바 있다.

동 규정의 입법취지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오히려 정신지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헌법에 합치된다는 견해이다. 즉 심신상실자 등은 일반인에 비하여 자기보호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을 허용할 경우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비롯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은 본질적으로 위험 및 동질적인 위험 단체를 전제로 한 것이고 위험 인수와 보험료 지급 사이에 균형이 요구되는데,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지나치게 높아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위험단체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하나의 논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헌론

동 규정이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명보험 가입을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그 합리적 차별의 이유가 없고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견해이다. 즉 정신장애인도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에서 배제될 근본적인 이유는 없으며, 특히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자신의 사후에 그 자녀가 생계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도록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고, 오히려 이것은 일반인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임에도, 정신장애인임을 이유로 하여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근본적으로 박탈함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한 이 견해는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심한 노이로제 환자나 정신병자 등이 민법상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들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심신미약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본다. 특히,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의문시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기타 다른 자 또는 방식에 의한 동의의 여부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바, 이 역시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헌론의 논거로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입법례를 보면,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동의주의’ 이외의 다른 입법례들이 존재하고 있고⁴⁸⁾, 우리와 같은 동의주의를 취하는 일본 상법에서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은 있으나 우리와 같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도 들 수 있을 것이다.

4. 보험업법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험업법의 제14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보험모집인⁴⁹⁾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금융감독원은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모집인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였을 때 위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감독원이 업무정지, 등록취소 기타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⁵⁰⁾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매우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금융거래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⁵¹⁾, △ 보험업법 제1조에서

48) 영미법계에서는 ‘이익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생존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관계, 즉 피보험이익을 가지는 것을 계약의 요건으로 삼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보험수익자의 자격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나 일정 범위의 친족으로 제한하는 ‘친족주의’의 입법례도 있다.

49) 보험업법 제2조에 의하면 “보험모집인”이라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하고,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50)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행위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위 조항을 적용한 예는 찾아 볼 수 없으며,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논의도 아직은 없다.

이 법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도 보험 모집에 있어서 현저히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정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염두에 둔 규정이 아니고 보험모집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 동 조항은 보험업법에서 보험모집인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각종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동 의무규정 및 금지규정⁵²⁾에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는 점, △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는 것은 비례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동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고 명확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⁵³⁾ 등을 근거로 장애인의 보험가입

51) 헌법재판소도 구 보험업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 제2항 제2호 위헌제청 사건(2002년 1월 31일 2000헌가8 전원재판부)에서 “보험은 그 상품의 성격상 일반 소비자들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일반 상품과 같은 소극적인 점두판매가 어려우며 그 상품내용을 일반대중에게 이해시켜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잠재적 수요를 인식시키도록 하여 구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대중의 수요 환기 및 상품선택과 관련, 적극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기 쉽고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것이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계약유인 단계에 불과한 보험모집 단계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52)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권유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에게 특별한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미 성립한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 보험계약을 청약케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제156조 제1항), 또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157조 제3항).

53) 실제로 동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어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되었는바, 헌법재판소는 동 조항은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 규정을 통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보험법의 다른 원리나 입법취지, 그 밖의 다른 규정들과의 유기적인 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무엇을 기준으로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알 수가 없고, 그에 대한 사회통념이나 경험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똑 같은

거절에 대하여는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동법 제24조, 제24조의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동법 제67조 제2호).

따라서 장애인과의 보험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장애인과의 보험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 만일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면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므로 장애인의 보험 차별을 금지시키는 데 실효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관련)”을 정하면서 거래거절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

1. 거래거절

행위를 두고도 법관에 따라서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만으로 그 의미를 구체화, 명확화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모집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요건으로서의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수범자인 보험모집인으로서의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가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이 내려질지를 예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독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은 초래하여 보험모집인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넘어서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위험을 담고 있다 할 것이다.”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나.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차별적 취급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1호 후단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격차별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거래조건차별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라. 집단적 차별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

위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거래거절행위 또는 차별적 취급행위 모두 그 상대방이 사업자⁵⁴⁾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견해에 의하면 보험계약 중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비록 장애인의 보험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장애인과의 보험조건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법률에서 행위의 상대방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데, 시행령에서 사업자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좁히는 것은 부당하며 거래 상대방을 굳이 사업자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6. 소비자보호법

소비자보호법 제10조에서는 “국가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는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업자는 그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도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당연히 보장받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가는 소비자인 장애인이 보험용역의 공급 및 거래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며, 사업자도 장애인을 소비자로 인정하고 그 보호를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7. 관련 기관의 권한 및 장애인 보험 차별에 관한 정책

가. 개 괄

54)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의 보험 차별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각 기관이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어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보건복지부

정부조직법 제39조에 의하면 행정각부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⁵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내에서는 사회복지정책실의 장애인정책과 및 재활지원과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⁵⁶⁾.

55) 제39조 (보건복지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생활보호·자활지원·여성복지·아동·노인·장애인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56)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1조 (사회복지정책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2.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43.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44.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45.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46.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7.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48.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9.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50.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51.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52.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정책실에 두는 과)

①사회복지정책실에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과, 자활지원과, 복지지원과, 노인복지정책과, 노인보건과, 가정·아동복지과, 보육과, 장애인정책과 및 재활지원과를 둔다.

②장애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장애인복지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질의회신
3. 장애인등록 및 장애인에 관한 조사·연구
4.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
5.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의 운영

따라서 현재 행정각부 중 장애인의 보험차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부처는 보건복지부인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권한범위는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관한 조사·연구, 장애인의 보험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장애인의 자립 지원의 차원에서의 장애인 보험 가입의 활성화, 이를 위한 계몽 및 권고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보험차별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민간보험 차별문제를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 받은 적도 없고 향후 어떠한 조사나 조치계획이 없음을 알려왔다. 이는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인 ‘보험’의 문제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금융감독원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수요자를 보호할 목적을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관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국은 보험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장애인도 현재 또는 장래의 보험계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보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의 보험차별 문제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장애인복지관련 국제협력

⑬재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및 지원
2.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3.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지원
4.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5. 장애인재활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6. 장애인의 체육·재활정보 및 결연사업

이에 따라 그 동안 보험 차별에 관한 장애인의 민원은 대부분 금융감독원에 접수하여 처리되었으며, 앞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의 보험차별에 관한 개선조치도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 그 동안 (1) 장애의 원인에 관계없이 질병상태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즉 장애의 원인이 재해이고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조건 및 보장금액의 한도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장애의 원인이 재해이고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또는 장애의 원인이 질병인 경우에는 질병정도에 따라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2) 장애인을 위한 전용상품의 적극적 개발을 장려(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장내용으로 상품을 설계하고, 장애인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보험가입시 신계약비를 최소화하여 보험료 할인혜택이 부여된 상품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감독, 지도행위를 해왔으며, △ 앞으로도 선진외국의 장애인 관련 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독기관, 보험업계 및 유관기관이 각각 역할분담 체계를 갖추어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입장이라고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관련 보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장애인의 보험 차별과 관련된 민원은 모두 19건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질의,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의, 장애인 보험의 개발 건의, 장애인의 보험가입금액 감액, 장애인 보육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에 관한 민원이 주된 것이었으나, 상법 제732조의 개정에 관한 검토 요청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결과를 보면, △ 상해보험의 가입이 거절된 사안, 장애인 보육시설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안들에서 해당 보험회사가 민원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조치를 취한 후 민원이 철회된 경우들이 있었고, △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생보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의 보험가입제한 및 차별내용이 완화되었고,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개발되었음을 알려주면서, 다만 보험상품개발과 계약인수 여부는 보험사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 상법 제732조의 개정의견에 대하여는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자기판단능력이나 자기보호능력이 취약한 자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체결을 허용할 경우 보험금 수취를 위한 피보험자 살해 등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①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②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③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④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⑤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⑥ 인권침해의 유형·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⑦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⑧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⑨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⑩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업무로 하고 있으므로(동법 제19조),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행위에 관한 조사와 구제를 비롯한 각종의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민간보험에서 차별행위를 당한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이러한 진정이 제기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진행한 후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개시되어 조정과 같은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인권위원회는 구제조치의 이행, 제도·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동법 제44조), 이에 대하여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하지만(제44조 제2항, 제5조 제2항 내지 제4항),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VI. 민간보험의 장애인 차별 현황 조사

1. 기본 현황 분석

보험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내 보험회사의 현황, 보험상품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가. 보험회사의 현황

생명보험협회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는 모두 22개(외국계 9개사 포함)이고, 손해보험회사는 모두 13개이다(각 협회의 회원사 현황). 총자산의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 생명보험에서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 흥국생명, SK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신한생명, ING생명, 럭키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 대신생명, 동부생명, AIG생명, 라이나생명, PCA생명, 한일생명, 프랑스생명, 뉴욕생명, 카디프생명의 순이며, △ 손해보험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화재, 서울보증보험, LG화재, 동부화재, 동양화재, 코리안리재보험, 제일화재, 신동아화재, 쌍용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교보자동차보험의 순이다.

나. 보험상품의 현황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크게 구분되는바, 개인보험에는 교육보험,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재해상해, 암건강, 종신) 등의 상품이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재산보험 등의 상품이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장애인 전용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는 생명보험의 경우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럭키생명이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 쌍용화재, 동부화재, 대한화재가 있다.

2. 보험과 장애에 관한 의학적·통계적 자료 조사

장애인의 경우 보험사고가 일어날 위험율이 일반인보다 높은지 여부는 장애의 종류에 따른 의료적 분석(예컨대 청각장애인들이 암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려면, 청각장애인들의 암 발생 확률이 일반인 보다 높다는 의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과 통계적 분석(예컨대 시각장애인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일반인들보다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것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계 및 의료계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여 재해나 사고로부터 위험보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고나 재해 등 이른바 보험사고에 따른 상병이나 사망 기타 보험사고의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더 높은지에 대해 의학적, 통계적 조사연구가 있는지 여부를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재활의학회, 서울대보건대학원, 연세대보건대학원, 보험개발원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조사연구 보고사실이 없으며, 이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등에 기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결과 다른 기관들이 위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신하지 아니한 것도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의학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사이트인 의학연구정보센터(www.medric.or.kr) 및 보건연구정보센터(www.richis.org)와 보험개발원, 보험학회 등의 사이트에서도 관련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의학적·통계적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특정 장애인의 보험사고 위험율이 높다는 예단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건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회사 및 우리 법원이 신체장애에 대한 평가기준(즉 신체장애가 발생하

였을 때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맥브라이드표 (McBride Table)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맥브라이드표는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맥브라이드가 1936년 발간한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에 제6판이 발간되었는데, 신체장해별로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전신장해율이 표시되고, 이 장해율은 1~9의 직업계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및 법원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표는 △ 맥브라이드의 전공분야인 정형외과에 치중되어 있고 치과 부분이나 추상장해 등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 직업이 육체노동자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고, △ 신체장해가 있으면 그것이 영구적이든 진행중인 것이든, 일시적이든 가리지 않고 장해율을 표시하고 있고, △ 등급판정에 있어서 해당 조항이 없을 때 유사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신체장해를 판정할 수 있다는 준용규정이 없고, 한 부위의 장해가 관점을 달리하면 두 개 이상의 장해로 중복평가될 우려가 있으며, △ 무엇보다도 1960년대의 뒤떨어진 의학수준에 기초하고 있어 의학적 기술의 진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⁵⁷⁾.

3.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 분석

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생명보험회사 두 곳⁵⁸⁾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57) 황현호, '현행 신체감정의 실태와 문제점', 인권과 정의 2002년 12월호, 대한변호사협회

58) 삼성생명의 무배당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 무배당삼성연금보험(공시이율형),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종신형)의 주계약 약관 및 각종 특약 약관 및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 교보생명의 무배당교보큰사랑교육보험, 교보비과세근로자우대저축보험의 약관 및 각종 특약 약관, 사업방법서, 상품요약서를 살펴보았다.

(1) 심신상실/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약관 중 ‘계약의 무효’ 조항에서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 조항은 상법 제732조를 약관으로 명시한 것이다(위 상법 조항이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 여부는 이미 살펴보았다).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입원급여금 지급배제

입원특약 중 ‘선천적인 장애로 입원한 경우’ 및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급여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선천적인 장애로 입원한 경우를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장애로 인하여 입원할 개연성이 높고 이 때에는 보험이 예정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지만, 정신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를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신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입원특약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원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입원한 경우를 신체의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와 구별하여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른 사유들을 보면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 치의보철, 임신·분만,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미용상의 처치 등으로 입원한 경우인데, 이러한 사유들과 정신장애를 동렬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 신체장애자의 필요적 건강진단

건강진단 여부와 관련하여 상품요약서에서 S생명의 경우 “피보험자의 기존 보험 가입상황 및 연령,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으나, K생명의 경우 “신체장애자는 유진단”이라고 명시하여 신체장애자의 경우 상품의 종류, 장애의 원인과 상태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렇게 신체장애자의 보험가입시 피보험자의 장애의 원인, 상태,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따지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한 곳⁵⁹⁾의 약관, 상품요약서 및 사업방법서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을 구별하여 취급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신상실 및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무효

손해보험 회사가 취급하는 상품 중에도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의 보상 제외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다른 사유를 보면, 피보험자·수익자·계약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자해·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피보험자의 임신·출산 등이다. 이처럼 정신장애가 발병한 경우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상해보험 또는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인데, 정신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신체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와 구별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러한 구별취급은 차별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59) 삼성화재의 해외여행자 보험, 보통상해보험, 무배당 삼성의료보험의 약관 등을 살펴보았다.

4. 인수지침의 조사·분석

가. 개 괄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인수에 있어서 내부적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인수지침(Underwriting Guideline)을 분석하여 보험회사들이 내부적인 지침으로 장애인을 구별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의 모든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에게 장애인 관련 인수지침의 제출을 요청하였는바, 인수지침을 확보할 수 있었던 보험회사들은 삼성생명, 교보생명, SK생명, 동양생명, 럭키생명, 동부생명, 알리안츠, 매트라이프, 푸르덴셜, 뉴욕생명을 비롯한 10개의 생명보험회사와 동부화재, 동양화재, 삼성화재, LG화재, 제일화재, 현대해상을 비롯한 6개의 손해보험회사였다.

나.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현재 생명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을 살펴보면, 앞의 III. 3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생명보험협회가 2000년 9월경 마련한 “장애인보험 공동계약심사기준”을 그대로 인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과, 이와는 일부 다른 내용의 인수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생명보험협회의 공동계약심사기준이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 밖의 인수기준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동계약심사기준에 의한 인수불가 9개 항목

생명보험협회의 공동계약심사기준에 의하면, 과거 보험계약의 인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던 장애등급분류표상의 장애항목 71개 중에서 57개 항목이 ‘정상’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9개 항목은 인수불가 항목으로 유보되어 있으며,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장애의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제작한 계약사정기준표상의 기준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르되 치료중이거나 수술 전 피보험자는 일정시간 경과 후 상태가 안

정화된 후 Rating을 통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생명보험회사들은 위 심사기준을 원용하여 다음과 같은 9개 항목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의 인수를 일체 거절하고 있다.

<표 2> 인수불가 장애등급 항목

등급	인수불가 신체장애	비고
제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농아는 인수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3급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관탈출증은 제외)	곱추는 인수
제4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언어장애는 인수 약관상의 심신상실(박약)자로 간주하여 거절 고환상실자는 인수

장애등급분류해설에 따라 위 항목들에 나오는 각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이상에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이상에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
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애로서 구순음(口,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애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생명보험협회가 위와 같은 9개의 인수거절 항목을 유보한 것은 위 항목의 장애가 있는 경우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정신장애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미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애를 가진 사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수를 거절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위 장애항목들과 각종 보험사고(질병의 발생, 입원, 사망 등)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위험율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의학적·통계적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중증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일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9개 항목에 대한 일반적 인수거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신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인수거절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특히 생명보험회사들의 보험상품 중 사망을 제외한 보험사고만을 취급하는 보험상품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사실상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경중을 불문하고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형편이다), 상법 제732조가 무효로 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를 근거로 모든 보험상품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생존보험’, ‘상해보험’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자를 피보험자로 하더라도 그 정신장애자가 행위능력 및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⁶⁰⁾ 그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험상품에 대하여 정신장애의 경중 및 상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2) 인수불가 항목을 사실상 확대하고 있는 경우(특약 배제 포함)

D생명의 경우, 9개 인수불가 항목 이외에도 장애등급분류표 각각에 대하여 3개의 단계로 나누어 인수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등급의 각 항목에 대하여 ① 대개 정상(대부분 정상이나 장애원인 및 질병정도에 따라 가입한도 제한함), ② 정상~조건부(장애원인 및 진단결과에 따라 정상에서 조건부까지 심사 가능), ③ 정상~사절(장애원인 및 진단결과에 따라 정상에서 사절까지 가능)로 나누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개별적으로 장애의 원인 및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수 여부 및 보험조건을 결정한다는 것으로서 일응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생명보험협회가 장애의 원인이 재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장해항목들에 대하여 다시 개별적인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실제로는 보험모집 단계에서는 보험인수의 거절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보험사고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거의 관계가 없다고 추정되는 각종 장애들에 대하여도, 일반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개별적·구체적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된다.

60) 정신장애자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일상적인 의사판단능력이 있다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한정치산 선고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능력도 인정된다.

S생명의 경우에는 9개 항목 이외에도 아래의 장애 항목에 대하여는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애에 대하여 ‘불가’라는 기준을 세우고 있어 사실상 인수불가의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나아가 71개의 장애항목에 대하여 입원특약 및 입원급부 상품은 모두 가입불가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

-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그런데,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애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의 보험 가입을 일반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모든 장애인은 입원특약 및 입원급부상품을 배제하는 것도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조치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다른 S생명을 비롯한 기타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입원특약 또는 기타 특약의 가입 가능 여부를 일반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3) 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장애 등급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S생명의 경우 다 음과 같이 장애 등급에 따라 최고보험금액, 장애급여, 질병입원 등을 제한하고 있었다.

<표 3> 장애등급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제한

등급	최고보험금액	장해급여	질병입원
1급	1억원	1억원	1만원
2급	1억원	1억원	1만원
3급	1억원	1억원	1만원
4급	2억원	2억원	1만원
5급	4억원	2억원	3만원
6급	5억원	5억원	3만원

* 최고 5억이상건의 경우 선심사 후 계약인수

* 상해보험 5-6급에서 선별적 인수

D생명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최대 3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가입한도를 제한하였으나, 현재에는 가입한도를 장애의 상태, 직업, 연령에 따라 최대 10억원으로 증액하였다고 한다. 그밖에 다른 보험회사들은 가입한도 제한을 폐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와 같이 장애인의 상태, 직업, 재력과 보험상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입한도를 장애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4) 건강진단의 요구

모든 장애등급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었으나(S생명), 대부분의 회사들은 장애등급에 따라 건강진단이 필요한 경우와 아닌 경우(청약서에 의한 장애의 고지로 대체)를 나누고 있었다(S, L, D생명). 신체장애자의 경우 건강진단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 원인 및 현재 상황을 고지한 내용으로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때에는 고지내용 또는 질문서로 갈음한다는 일반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N생명).

<표 4> 건강진단 필요 여부

등급	신 체 장 해	L생명	S생명 D생명
제1급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유진단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인수불가	"
	중추신경계 또는 장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인수불가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인수불가	"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유진단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제2급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인수불가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인수불가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유진단	"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유진단	"
제3급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유진단	"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

등급	신 체 장 해	L생명	S생명 D생명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인수불가	"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 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유진단	"
제4급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인수불가	"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인수불가	"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인수불가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10발가락은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유진단	"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유진단	"

등급	신 체 장 해	L생명	S생명 D생명
제5급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유진단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유진단	"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유진단	"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유진단	"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유진단	"
제6급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유진단	무진단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등급	신 체 장 해	L생명	S생명 D생명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무진단	"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무진단	"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유진단	"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유진단	"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유진단	"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유진단	"

위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L생명의 경우 71개 항목 중에서 모두 23개의 항목에 대하여 무진단 방침을, S생명과 D생명의 경우 모두 30개 항목에서 무진단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하여 보험회사들은 재해로 인한 ‘단순 절단 장애인’의 경우 진단을 면제하고, ‘질병 및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의 경우 일률적으로 진단을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절단 장애의 경우에도 일부 진단을 요구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두부 추상과 같은 장애의 경우에도 진단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의학적, 통계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기 타

장애등급분류표상 1급 내지 3급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상품의 가입을 불가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있었다.

다. 손해보험회사들의 인수지침

(1) 인수거절

1~3급 장애인, 척추관련 4~5급 장애인, 보조기구의탁 및 사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인수를 금지하고, 보조기구의탁 및 착용하지 않은 4~6급 기능장애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첨부하여 심의하되 본부에서 결정하고, 지체장애(디스크 등), 시각/청각 장애, 씹는 기능 장애, 정신지체자는 인수를 금지하고 언어장애 및 후각 장애자는 본부에서 인수심의를 하도록 하는 회사가 있었다.

또한 지능장애자,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거나 서는 것이 곤란한 자 및 보행 곤란자, 평행기능 장애자, 양안실명자, 한쪽 눈이 실명되고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가 중복된 자, 지체부자유 장애자로 기타 장애상태를 겸비한 자는 인수를 금지하는 회사가 있었다.

이러한 인수거절 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인수기준의 제한

신체장애자의 보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망후유장애는 5만원 한도, 의료실비는 1백만원 한도, 일당은 2만원 한도, 질병일당은 2만원 한도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신체장애자 전부에 대하여 장애의 상태, 정도, 보험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

5. 장애인 전용보험의 현황

가. 서 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금융감독원의 독려에 따라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3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을 개발하여 2001년 2월 16일 금융감독원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처음으로 판매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럭키생명이 2002년 7월부터 장애인 전용상품을 판매하였고, 손해보험회사들 중에도 쌍용화재, 동부화재, 대한화재가 장애인 전용상품을 판매하였다.

나. 개요 및 주요담보내용

장애인 전용상품의 개요를 생명보험을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 예정위험율 : 기존 일반인과 동일한 위험율 사용
- 예정이율 : 연 7.0%복리(일반보험의 경우 시장금리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 대부분 6.5%이하 적용)
- 예정사업비율 : 일반보험의 80%수준에서 책정
- 보험상품명 : 대한 「장애인전용(무)곰두리보장보험」 삼성 「장애인전용(무)곰두리생활보험」 교보 「장애인전용(무)교보곰두리보장보험」

<표 5> 주요담보내용

구 분	주요 지급사유	주요 급여명	비 고
소득보장형	장애인과 부양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장애인종신연금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암보장형	장애인이 암으로 수술 또는 입원하게 되는 경우	암진단자금 암수술자금 암입원급여금	
정기보험형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 장애인종신연금의 지급기간은 최초연금지급 해당일로부터 장애인사망시(종신)까지임

- 보험료 예시

- 주피보험자 45세, 배우자 40세 장애인 15세
- 20년만기, 10년납,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3년생 : 순수보장형 49,400원, 만기환급형 69,000원
 - ⇒ 2년생 : 순수보장형 42,700원, 만기환급형 61,500원

다. 판매현황

각 보험회사들의 장애인 전용보험 판매현황은 다음과 같은바, 대체로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표 6> 장애인전용보험판매실적

생명보험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상품명	2001년 ~ 2002년 10월	
		판매건수	수입보험료
삼성생명	무배당곰두리 종합보험	1,213	498
교보생명	무배당교보 곰두리보장보험	1,278	393
대한생명	장애인전용 무배당 곰두리보장보험	814	164
럭키생명	장애인전용 무배당 은사랑미래보장보험	-	35
계		3,305	1,090

손해보험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상품명	1999년 ~ 2002년 11월	
		판매건수	수입보험료
쌍용화재	곰두리사랑보험	20	21
동부화재	곰두리	409	252
대한화재	장애인사랑	14	11
계		443	284

- 주) 1. 쌍용화재는 2000년 이후 신계약은 없으며 현재 판매중지 상태
 2. 동부화재는 2002년 7월, 대한화재는 2002년 10월에 신고수리

라. 평 가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차별을 철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견해들이 많다. 특히 증여세 비과세 및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장애인 전용상품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장애인의 보험차별 문제는 일반 보험상품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장애인 전용상품 몇 개를 전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전용보험은 종류와 판매회사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손쉽게 받으려는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상품의 판매실적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 전용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의지가 부족하여 사실상 ‘전시용 상품’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월간 맏인복지 2001년 5월호의 기사에 의하면⁶¹⁾, 장애인 전용보험은 ① 9개 항목 장애인들은 여전히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점, ② 기존보험의 만기연령은 대부분 80세이지만, 장애인의 경우 70세로 짧게 되어 있는 점에서 기존의 보험과 차이가 있는 반면, ③ 보험료나 보상내역에 있어서는 기존 보험과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굳이 장애인 전용보험의 방법이 아니라 기존 보험의 가입장벽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61) 김선희 기자 작성, “기자수첩”

<표 7>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과의 비교(교보생명 상품)

(단위 만원)

구분	클릭나이스암보험	베스트라이트암보험	장애인전용곰두리보장보험
보장내역 및 보험금	-암진단자금-1000(200) (이하괄호안은 상피내암) -암수술시- 300(60) -암입원시- 5(1) -만기생존시- 납입보험료전액 -4대암(위,간,폐,대장암)- 1000 -함암물질치료- 100(50) -양성종양입원수술- 회당 100	-고액암치료비- 5000 -일반암치료비- 2000(200) -암입원비- 10(3) -암수술비- 회당 500(100) -암통원비- 회당 3(1) -암간병비- 1,2,3,4월 각 경과시마다 200 -함암방사선치료- 100(50) -함암약물치료- 100(50) -건강축하금- 만기환급형 납입 주계약보험료 60% - <u>암사망특약</u> - 1000 - <u>입원특약</u> - 1 - <u>4대암치료비특약</u> - 1000 - <u>사망특약</u> - 1000	-만기급여금-기납입보험료 -암진단자금- 1000×2 -상피내암진단비- 200×2 -암수술자금- 500×2 -상피내암수술자금- 100×2 -암입원급여금- 5×2 -상피내암입원비- 1×2 -암통원급여금- 회당 3×2 -상피내암통원급여금,회당1×2 -암간병자금-입원후 1,2,3,4월 각 경과시마다 100×2 -상피내암간병자금 상동 -암사망보험금- 1000
보험료	26,220원	49,600원	14,900원
보험가입 금액	1000	1000	500
보험기간	20년	20년	20년
납입기간	20년	15년	20년
가입연령	40세	39세	40세

위와 같이 동일회사의 상품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이 거의 유사하게 설정된 상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보장내역

- 장애인전용(무)곰두리보장보험과 클릭나이스암보험과의 비교

장애인전용(부)곰두리보장보험(이하 “장애인보험보험”이라 한다)에 있어 암 발생시 단자금,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간병비 등 기본적인 필요자금은 지급되나 암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인 항암방사선치료나 항암물치료비와 4대암 보장과 양성종양수술비가 보장되어 장애인보험에 비해 더 나은 상품으로 평가된다.

- 장애인보험과 베스트라이트암보험과의 비교

두 보험의 비교에 있어 특약을 제외하면 클릭나이스암보험과 베스트라이프 암보험과는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베스트라이프암보험의 경우에 진단자금을 대신해 치료비 명목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고액암 치료비와 일반암치료비를 다른 두 보험에 비해 고액인 걸 제외하면 별다른 차이는 없다.

△ 보험료

세 가지 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보장내역과 보험료를 함께 총평에서 비교한다.

△ 총평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같이 두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어느 보험이 우월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암환자들의 실태를 볼 때 암환자에게는 항암방사선치료나 항암약물치료가 필수적인데 장애인보험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아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인보험보다는 열등한 상품이라고 판단된다. 베스트라이프암보험은 장애인보험보다 보험료가 3배 이상 되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보장에 있어서 그 이상의 보장을 받는 것으로 평가되어 장애인보험보다 월등히 나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결국, 장애인보험은 비장애인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보장내역에서 더 많이 삭감하게 되어 보험료와 보장내역 모두를 두고 손익관계를 평가했을 때 장애인보험은 비장애인보험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

가. 개 요

2002년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장애인 시설을 대상으로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수교육기관 137곳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복지시설 527곳에 설문지를 송부하고 협조를 구하였으나, 특수교육기관 14곳, 복지시설 60곳이 응답하여 설문지 회수율

은 12.25%에 그쳤다. 설문에 응한 장애인 시설의 유형은, 장애인 생활시설이 52.70%,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13.51%, 장애인 요양시설이 14.86%, 특수학교 18.92%였다.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보험에 가입한 시설이 95.95%였고,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화재보험 31.40%, 가스보험 25.58%, 자동차보험 11.0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해보험,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시설은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재보험 또는 가스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로 인한 재물 손해배상 이외에 대인배상 특약도 함께 가입한 경우가 70.42%, 그렇지 않은 경우가 26.76%로 나타났다⁶²⁾. 대인배상 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시설들의 경우,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가입을 거절당하였다는 응답이 36.84%가 나왔다. 장애인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신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시설보다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재보험 중 대인배상 특약에 가입한 비율이 매우 낮았으며, 보험가입 거절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 비율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87.84%가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변하였고,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보험의 종류에 대하여는 상해보험 25%, 화재보험 21.43%, 종합보험(안전보험) 12.5%, 여행자보험 7.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① 높은 보험료 48.39%, ② 예산부족 35.48%, ③ 가입대상에서 제외(또는 거부) 16.13%로 나타났다.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이 27.03%, 주위에서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곳이 2.7%로 모두 29.73%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험 가입

6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실시된 200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때 실시된 장애인 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화재보험 중 대인보험과 대물보험 모두 가입한 시설이 50%, 대물보험만 가입한 시설이 50%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사회복지시설평가 참조).

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68.42%가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을 거부당한 보험의 종류는 ① 상해보험 31.58%, ② 여행자보험 26.32%, ③ 화재보험 대인특약 21.05%, ④ 생명보험 10.53%, ⑤ 배상책임보험 및 자동차보험이 각 5.26%로 나타났다.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① 높은 위험 부담(장애인 시설을 이유로)이 85.71%, ② 장애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특히 정신지체장애)된다는 것이 9.52%, ③ 높은 보험료 때문이라는 답변이 4.76%로 확인되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경험이 있는 시설은 2.7%에 불과하였다.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보험에 가입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시 불편했던 점을 물어본 결과 ① 까다로운 심사절차 19.23%, ② 일반시설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14.1%, ③ 증빙서류의 준비 6.41%, ④ 무응답 60.26%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시설임을 알았거나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90.14%였고, “알지 못하였다” 또는 “보험설계사만 알고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나, 무응답이 9.86%인 것으로 보아 일부 시설에서는 장애인 시설임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추측된다.

마. 보험금 수령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해본 경험이 있는 시설은 4.23%에 불과하였고, 보험금을 타 보았다고 응답한 시설들은 모두 보험금의 액수가 적정했다고 답변

하였다.

바. 기 타

“장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89%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아니오 45.59%, 무응답 12.16%). 그렇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장애인을 가입대상에서 제외(또는 거부)하는 것, 높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 등을 부당하다고 보았다.⁶³⁾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는 ①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64.86%, ②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 전용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24.32%, ③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10.81%로 나타났다.

장애인 관련 보험에 대한 기타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보험이 있었으면
- 보험과 별개의 보장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 장애를 세분화하여 적은 보험료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장애를 이유로 혹은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기피 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요함
-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사회적 보험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
- 장애인도 일반인에 준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 장애인에게는 특히 더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높은 위험부담(낮은

63) 그밖에 △ 생명보험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일반인과 차별,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위험도 높다는 이유로 거부, △ 장애영역에 따라 위험도 차이가 있을 텐데, 무조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 △ 장애인은 선택된 보험영역에서만 가입가능(정신지체장애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등 불가), △ 특히 여행자보험의 경우 장애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다.

수익률)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가능한 보험상품이 거의 없다

- 장애인의 경우 사고보상금액이 적음
- 장애인의 경우 질병, 상해 등에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사의 손실가능성을 대손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마련되어야 함.
- 의료비관련 본인부담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장애상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위험을 줄여주는 보호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

사. 소 결

장애인 시설의 보험가입은 주로 화재보험과 가스보험과 같은 시설보험에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의 가입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애인 시설임을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의 대인배상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당한 시설이 약 30%에 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 차별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41% 가량 나온 것에 비추어 보면, 아직도 보험회사들이 장애인 시설의 보험인수를 꺼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

가. 개 요

2002년 10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의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단체에 설문조사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나,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등 일부의 단체만이 이에 협조하여, 응답자의 숫자가 적었으며(총 113명), 응답한 사람들의 장애유형을 보면 지체장애 47.56%, 청각장애 36.28%, 시각장애 4.42%, 뇌병변장애 3.54% 등으로 지체장애자 및 청각장애자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조사의 한계점이다. 응답자를 장애의 등급별로 보면 1급 10.62%, 2급 47.79%, 3급 19.47%,

4·5급 각 8.85% 등으로 나타났다.

나. 보험가입 현황 및 보험가입 욕구

응답자들 중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71.68%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하나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의 종류를 보면, 자동차보험 30.82%, 건강보험 25.16%, 연금보험 15.72%, 상해보험 10.69%, 종신보험 5.03%, 장애인전용보험 3.14% 등으로 나타났고, 교육보험과 여행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83.19%의 응답자들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앞으로 가입하고 싶은 보험의 종류를 보면, 건강보험 23.56%, 연금보험 18.97%, 종신보험 12.07%, 장애인전용보험 8.62%, 재해보장보험 8.05%, 자동차보험 7.47%, 상해보험 6.9%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보험 가입 욕구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다. 보험 가입 거절 또는 해지 경험

응답자의 22.12%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13.27%가 주위에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여, 모두 35.39%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험의 가입 거부를 경험하였다. 응답자의 52.21%가 보험가입을 거부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답변자들 중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을 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다만,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시기가 2000년 이전일 경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77.5%가 '장애'를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다는 사람이 15.04%,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이 16.81%로 모두 31.85%가 장애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하는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숫자는 질문의 취지를 처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고 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라. 보험가입시 불편사항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불편했던 점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① 신체검사 요구(35.80%), ② 까다로운 심사절차(24.69%), ③ 기타(14.81%), ④ 증빙서류의 제출(13.58%), ⑤ 일반인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11.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밖에 보험에 가입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는지를 주관식으로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일반인들과 차별 질의 차이
-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모집인의 권유로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예가 있다.
- 특히 장애인전용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조차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일반보험사는 이 보험의 가입신청을 상당히 꺼려했다.
- 장애인진단서류 제출요구(현재 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제시하면 되는데..)
- 장애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했었음
- 장애인이기에 매번 신체검사(건강진단)가 필요하고 보장액의 절반밖에 보장이 안 된다
-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일에 대하여
- 종신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인 재해상해, 재해사망시 보상부분이 특별한 기준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
-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예, 장애부분에 대한 제외 보상)

마. 장애인 전용보험

장애인 전용보험에 관하여 들어본 사람이 38.05%이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58.41%로 나타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보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①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는 의견이 36.28%, ②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 전용상품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22.12%, ③ 잘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36.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 시설의 담당자들의 경우 환영한다는 의견이 64.86%였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다.

바. 보험금 지급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들에게 보험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 본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답변이 18.52%였고, 이 때 보험금의 액수가 적었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적었다는 의견이 40%, 일반인에 비하여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로 나타났다.

사. 소 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고,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해지당한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보험가입시 신체검사를 요구하고, 까다롭게 심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는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장애인 전용상품의 도입을 환영하는 사람의 매우 적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위 설문조사는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매우 낮고, 지체장애와 청각장애인이 주로 응답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8. 보험회사의 직원들의 인식조사

가. 개 요

2002년 11월 20일부터 12월 2일까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및 인수업무를 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계약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장애인과 보험의 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리서치 전문회사인 “중앙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 및 수도권에 근무하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담당자 또는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외국계 3개 회사 포함 총 7개 회사)가 62명, 손해보험회사(4개 회사)가 38명이었으며(총 100명), 조사방법은 전화조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나.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장애인으로 부터 직접 보험 가입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37%,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취급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45%로 나타나,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보험업무를 취급해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의 용이성

장애인의 보험 가입이 일반인보다 어렵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54%,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6%였다.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① 가입 자체가 어렵다(14.8%), ② 가입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77.8%), ③ 가입은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비싸다(5.6%), ④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이 낮다(5.6%), ⑤ 특약부분에 제약이 많다 (1.9%)고 답변하였다.

한편 장애인과 관련한 보험 업무를 취급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도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다(무경험자 56.4% : 유경험자 51.1%).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과 관련해서도 무경험자들은 가입 자체가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무경험자 19.4% : 유경험자

8.7%), 유경험자들은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절차가 까다롭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무경험자 71.0% : 유경험자 82.6%).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계약담당 직원들보다 장애인들의 보험가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비율이 약간 높았고,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많이 하였다.

라. 장애인의 보험가입 요청시 거절 의향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요청할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라는 답변이 93%였다. 질문의 성격상 아니라는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7%가 거절하는 편이라고 답변한 점이 오히려 주목된다.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①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인수가 안 된다는 답변이 28.6%, ②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답변이 14.3%, ③ 장애인 보험 인수조건이 맞지 않거나 까다롭다는 답변이 14.3%, ④ 장애가 큰 경우라는 답변이 14.3%였다.

마. 장애인의 보험인수에 대한 회사의 태도

귀하의 회사에서는 장애인의 보험인수가 허용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중복답변을 허용함), 82%가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절차가 까다롭다”고 답변하였고, 20%가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5%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3%는 “허용되지만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비싸다”고 답변하였다.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상품이 따로 있다”, “가입금액에 제한을 둔다”는 답변도 각 1%씩 있었다.

바. 장애인의 보험사고 개연성에 대한 인식

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높지 않다”는 답변이 49%, “높다”는 답변이 48%로 나왔으며 기타의 답변으로는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2%,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1%였다. 그런데 장애인 관련 보험업무를 취급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장애인의 사고 확률이 높다고 답변한 비율이 높았고(높다 53.5%, 높지 않다 42.5%),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사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답변한 사람이 많았다(높다 43.6%, 54.5%). 그리고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계약담당 직원들보다 장애인이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본 사람이 많았다.

사. 소 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절반 정도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이 54%로 나타나, 장애인의 보험가입에 대하여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보험회사들의 인수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가입 자체가 어렵다는 답변이 20% 가까이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Ⅶ.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

1. 서 설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법적으로는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비롯한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적절하고도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을 봉쇄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의 개정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제도적으로는 중증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무조건 금지하는 생명보험협회의 공동계약심사기준이 개정되어야 하며, 인수지침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고, 보험회사의 직원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의식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보험의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보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법적 대안

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는바, 위 법안에서는 보험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37조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정의) 재화·시설·용역 등의 이용 및 제공이라 함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가 복지증진, 재산형성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금품, 건축물 등의 설비,

노무의 제공 등을 의미한다.

제39조 (장애인차별행위) 재화·시설·용역 등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된 장애인 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또는 고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계약, 면허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2. 소비자 또는 고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설물의 물건, 서비스, 시설, 편의제공에 참여할 기회를 거절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기회를 거절하는 경우
3. 소비자 또는 고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비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은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5.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자동차 할부판매 등 기타 금융제공에 있어서 장애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경우
7. 기타 재화·시설·용역의 이용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장애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이처럼 차별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화함과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서는 국가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동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와 구제, 소송 지원의 업무를 담당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앞의 V-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회사의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외에 실효성이 있는 적절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제재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정명령과 형사제재는 장애인 보험 차별행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구제조치는 보험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제안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같은 종합적인 입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노인·임

산부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소관 행정부처를 정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차별행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차별행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다. 상법 개정의 검토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하여 살인 등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하나, 위 규정을 근거로 정신장애인의 경우 그 장애의 경중을 떠나 더욱이 보험의 종류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면적으로 보험가입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덕적 위험에 대하여는 보상거절, 형사처벌 등의 수단으로 제재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 동의한 때에는 동의의 무효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그밖에 법정대리인을 통한 동의절차를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법 제732조를 개정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라.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의 개정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하여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조항이다. 그런데, 동법 시행령 제5조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정하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시설이야말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동법령상의 특수건물의 범위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에도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도록 개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제도적 대안

가. 서 설

아무리 좋은 법도 이를 준수하려는 의지와 시스템이 없는 한 빛을 발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관련된 제도와 의식의 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 생보협회의 공통 계약심사기준의 개정보완

중증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무조건 금지하는 생명보험협회의 공통계약심사기준은 개정되어야 한다. 만일 생명보험협회의 공통계약심사기준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보험인수를 일반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들은 중증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보험사고의 개연성이 높다는 증명을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중증장애인의 보험인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공통계약심사기준에서는 상법 제732조를 이유로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상법이 금지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보험계약에서 정신장애인의 보험인수를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의학적, 통계적 연구도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가 이러한 합리적 보험통계자료에 의거하고, 장애인 개인의 상태, 장애정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조건을 달리한다면 누구도 이를 비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인수지침의 집행 준수, 보험담당자들의 교육 및 의식개선

인수기준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더라도 이를 철저히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인수기준을 일선 보험담당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인수기준 기타 적절한 보험정책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일선 직원들에게 이를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회사의 직원들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태도와 관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의식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다.

라. 장애인 전용보험의 활성화

원칙적으로 보면,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을 만들기보다는 일반 보험상품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과도적으로는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장애인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장애인 보험상품이 전시용 상품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판매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정부도 보험회사 및 장애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전용상품이 장애인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마. 주무관청의 문제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관하여 주무관청을 명확히 하고, 주무관청이 일상적인 조사, 정책개발, 감독 등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한 태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금융감독원 또한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권을 바탕으로 장애인 보험 차별문제를 그 동안 다루어 왔으나, 보험업법 기타의 법령상 이 문제에 대한 감독권한이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에 대한 소관 기관을 명확히 하고, 그 기관이 이 문제에 관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감독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VIII. 결 론

1. 연구의 제한점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실태에 관하여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보험회사로부터 인수지침을 구하는 것이었다. 보험회사의 인수지침은 내부적인 경영비밀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인수지침을 제공한 보험회사들도 1차 자료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발췌하여 가공한 2차 자료를 보내왔기 때문에 가공한 자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수지침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어느 보험회사의 경우, 장애인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짧은 답변만을 보내왔는데, 그 보험회사의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상품안내서에는 장애인의 경우 무조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된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장애와 보험사고에 관한 의학적 보고나 보험통계 자료가 전무하여 개별적인 각종 장애와 개별적인 각종 보험상품과의 관계에 관한 정리를 할 수 없었던 것도 연구의 한계였다. 나아가 외국의 사례를 미국 위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장애인에 대한 설문조사에 있어 장애인 단체들의 비협조로 지체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위주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점, 보험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의식조사도 조사비용의 문제로 100명밖에 조사하지 못한 점 등이 연구의 제한점이었다고 생각된다.

2. 연구의 함의

2000년 이후 보험인수기준을 대폭 개정하고, 장애인 전용상품이 도입되는 등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이고 진보적인 조치들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험회사들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결과 인수지침에서의 차별요소의 잔존, 차별 관행의 존재, 의식 및 교육의 부족, 장애인 전용상품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보험에서의 장

애인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5항은 국가에 대하여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보호의무는 단순히 형식상의 평등을 보장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실질적인 기본권의 주체로서 평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보험에 있어서도 단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나아가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보험상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도 일반인과 균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방법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1] 일반현황 - 보험회사 및 상품현황

1. 보험회사현황

분류	회사명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회원사)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89 389 624 633">국내</td> <td data-bbox="624 389 1396 633">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대신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td> </tr> <tr> <td data-bbox="489 633 624 828">외국계</td> <td data-bbox="624 633 1396 828">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매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카디프생명보험 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td> </tr> </table>	국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대신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외국계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매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카디프생명보험 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국내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대신생명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 럭키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주식회사, SK생명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한일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외국계	뉴욕생명보험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매트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AIG생명보험주식회사, 카디프생명보험 한국지점,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 PCA생명보험주식회사				
손해보험회사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원사)	국내 교보자동차보험주식회사, 그린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엘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생명보험협회 (<http://www.klia.or.kr>)

*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nia.or.kr>)

가. 생명보험회사의 주요사업 개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총자산순위	총자산	운용자산	사업비
삼성생명	1	68,675,973	58,322,025	337,744
교보생명	2	28,644,635	22,642,824	468,085
대한생명	3	27,340,648	22,633,931	452,304
알리안츠	4	5,947,346	5,155,299	155,451
흥국생명	5	3,903,679	3,259,126	78,335
SK생명	6	3,486,122	2,578,792	85,487
동양생명	7	3,352,958	2,725,146	82,189
금호생명	8	2,877,537	2,324,381	64,613
신한생명	9	2,270,461	1,648,570	76,123
ING생명	10	1,521,916	965,244	56,771
럭키생명	11	1,102,133	365,172	16,562
메트라이프	12	1,092,556	799,323	20,343
푸르덴셜	13	982,246	644,243	37,740
대신생명	14	863,971	691,106	21,938
동부생명	15	761,165	501,766	25,735
AIG생명	16	374,224	198,808	23,189
라이나생명	17	219,223	153,677	31,260
PCA생명	18	120,024	67,678	6,184
한일생명	19	110,518	85,482	4,977
프랑스생명	20	68,185	54,861	3,541
뉴욕생명	21	63,693	19,896	4,279
카디프생명	22	1,736	1,356	2,167

* 월간생명보험통계 (생명보험협회) 2002년 9월호 내용 참고

나. 손해보험회사의 주요사업 개황

(단위 : 백만원)

회사명	총자산순위	총 자산	운용자산	순사업비
삼성화재	1	10,231,763	9,178,872	429,221
현대화재	2	4,064,626	3,489,544	201,094
서울보증보험	3	3,684,908	2,426,666	20,538
L G화재	4	3,496,529	3,041,676	175,591
동부화재	5	3,371,139	2,952,691	172,254
동양화재	6	2,035,973	1,785,805	86,700
코리아리재보험	7	1,822,181	1,004,498	136,112
제일화재	8	1,074,888	882,376	55,353
신동아화재	9	1,056,544	915,306	55,311
쌍용화재	10	999,195	801,300	61,244
대한화재	11	783,104	696,059	35,203
그린화재	12	460,227	381,346	25,983
교보자동차보험	13	93,168	68,010	9,497
A. H. A	14	65,340	45,296	14,496
ROYAL	15	43,609	38,962	1,072
FEDERAL	16	20,463	15,620	4,159
A C E	17	19,420	14,327	2,612
Swiss Re	18	19,157	14,917	989
Munich Re	19	13,876	10,259	871
Cologne Re	20	8,471	5,577	1,312

* 월간손해보험통계 (대한손해보험협회) 2002년 7월호 참고

2. 각 회사의 보험상품

가. 국내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국내)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교보생명보험	개인	교육		
		연금	직격	
			비직격	
			계약인수	
		저축		
		보장성	재해상해	
			암건강	장애인전용 곰두리보장보험
			통신판매	
	종신			
	단체	보장		
		저축		
	독립특약			
금호생명보험	개인	교육		
		연금		
		보장성		
		생사혼합		
	단체	보장성		
		연금		
대신생명보험	개인	보장성		
		연금		
	단체	보장성		
		저축성		

생명보험회사(국내)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대한생명보험	개인	보장성	곰두리보장보험암보장 곰두리보장보험사망보장
		연금	
		생사혼합	
	단체	보장성	
		생사혼합	
특약			
동부생명보험	개인	보장성	
		연금	
		저축	
	단체	보장성	
동양생명보험	개인	연금	
		보장성	
		양로	
	단체		
럭키생명보험	개인	보장성	
		일반연금	
		개인연금	
		생사혼합	
	단체	보장성	
삼성생명보험	개인	저축	
		연금	
		보장	곰두리종합보험
	단체	보장	
		저축	

생명보험회사(국내)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신한생명보험	개인	교육성	
		보장성	
		생사혼합	
		연금	
신한생명보험	단체	보장성	
		연금	
SK생명보험	개인	질병	
		재해	
		연금	
		양로	
		DM	
		종신	
		제휴	
		인터넷전용	
	단체	보장성	
		양로	
한일생명보험	개인	사망	
		생사혼합	
	단체		

나. 외국계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외국계)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뉴욕생명보험	주계약상품		
	특약상품		
라이나생명보험	주보험		
	특약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보험	보장	
		연금	
		단체	
		변액	
	특약	재해	
		입원	
		암/질병	
		보장성	
		기타	
알리안츠생명보험	개인	종신	
		교육	
		연금	
		보장	
		생사혼합	
	단체		
AIG생명보험	개인		
	단체		
	통신		
	특약		
푸르덴셜생명보험	보장성		
	생사혼합		
	특약		
프랑스생명보험	개인		

생명보험회사(외국계)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프랑스생명보험	단체		
	특약		
PCA생명보험	보장성		
	연금		

다.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교보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그린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건강의료보험		
	가정행복보험		
	여행레저보험		
대한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장기보험	운전자	
		상해	
		질병	
		재물	
		저축성	
연금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장기보험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곰두리개인용자동차보험	
동양화재해상보험	장기손해보험	장기상해	
		장기종합	
		연금	
		장기화재	
	자동차보험		
	일반손해보험	화재	
		상해보험	
		종합보험	
기타특종			

손해보험회사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일반	화재	
		책임	
		상해	
		종합	
		기타	
	보장성	운전자	
		상해	
		질병	
		가정	
		재산	
	저축성		
	개인연금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장기	장기상해	
		장기종합	
	일반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쌍용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상해보험		
	일반보험		
	기업보험		
엘지화재해상보험	일반보험		
	장기보험		
	자동차보험		

손해보험회사			
회사명	보험상품분류	장애인전용상품	
제일화재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화재특종보험		
	장기연금	장기상해	
		장기종합	
현대해상화재보험	장기보험	재물	
		상해	
		어린이	
		질병	
		저축성	
		개인연금	
	일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3. 장애인 전용상품

가. 장애인전용주요상품 가입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자

나. 주요 담보내용

구분	주요 지급사유	주요 급여명	비고
소득보장형	장애인과 부양관계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장애인종신연금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암보장형	장애인이 암으로 수술 또는 입원하게 되는 경우	암진단자금, 암수술자금, 암입원급여금	
정기보험형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다. 장애인전용 보험상품명

구분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동부화재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무배당교보곰두리종합보험 1 종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종합보험 1 종		곰두리개인용자동차보험
암보장형	장애인전용 무배당교보곰두리종합보험 3 종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종합보험 2 종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보장보험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장애인전용 무배당교보곰두리종합보험 2 종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종합보험 3 종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보장보험 (사망보장형)	
판매개시일	2 0 0 2 . 0 2 . 1 4	2 0 0 2 . 0 1 . 1 4	2 0 0 2 . 0 2 . 0 1	

라. 보험가입자격요건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여부
교보생명	무배당교보곰두리 보장보험 3종 (암보장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10년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	15-60세	일시납,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0년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	15-60세		
			전기납	15-55세		
		60세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	15-50세		
			15년납	15-45세		
			20년납	15-40세		
			전기납	15-50세		
		70세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	15-60세		
			15년납	15-55세		
			20년납	15-50세		
			전기납	15-60세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여부						
대한생명	무배당 곰두리보장보험 (사망보장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p>1>가입한도</p> <table border="1" data-bbox="1552 456 1951 762">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주계약</td> <td>보험가입금액 500만원부터 2000만원 (천원단위)</td> </tr> <tr> <td>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 사망보장특약</td> <td>주계약 1구좌당 1000만원 이내로 2000만원까지 (100만원단위)</td> </tr> </tbody> </table> <p>(단, 이미 가입된 계약이 있을 때에는 가입한도 변동가능)</p> <p>2>건강진단</p>	구분	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부터 2000만원 (천원단위)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 사망보장특약	주계약 1구좌당 1000만원 이내로 2000만원까지 (100만원단위)
		구분	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500만원부터 2000만원 (천원단위)									
		장애인전용 무배당곰두리 사망보장특약	주계약 1구좌당 1000만원 이내로 2000만원까지 (100만원단위)									
		10년만기	일시납,5년납	15-60세								
			전기납	15-55세								
		20년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	15-50세								
		60세만기	일시납	15-55세								
			5년납	15-50세								
			10년납	15-49세								
			15년납	15-44세								
			20년납	15-39세								
			전기납	15-50세								
		70세만기	일시납,5년납	15-60세								
			10년납	15-59세								
			15년납	15-54세								
			20년납	15-49세								
	전기납	15-60세										

보험회사	보험종목	보험기간 및 가입연령				가입한도 및 건강진단여부
삼성생명	무배당곰두리 종합보험 2종 (암보장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10년만기	일시납,5년납,전기납	15-59세	월 납, 2 개 월	
		20년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	15-49세		
		60세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	15-54세	납,3 개 월 납,6 개월납,연납	
		70세만기		15-60세		
	무배당곰두리 종합보험 3종 (사망보장형)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연령	납입주기	
		10년만기	일시납,5년납,전기납	15-58세	월 납, 2 개 월	
		20년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전기납	15-49세		
		60세만기	일시납,5년납,10년납,15년납,20년납	15-54세	납,3 개 월 납,6 개월납,연납	
		70세만기		15-59세		

마. 보험금 지급사유

(1) 1종 소득보장형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대한생명	
		교보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삼성생명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기준)		
만기급여금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주피보험자 및 장애인 모두 살아있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단, 만기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사망급여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500만원	500만원		
	보험기간 중 장애인이 사망하였을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 700만원 제3급 : 500만원 제4급 : 300만원 제5급 : 150만원 제6급 : 100만원	제2급 : 350만원 제3급 : 250만원 제4급 : 150만원 제5급 : 75만원 제6급 : 50만원		
장애인 종신연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장애인이 살아있을 때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액
		1차년도 계약해당일-11차년도 계약해당일의 전일	매년300만	1차년도 계약해당일-11차년도계약해당일의 전일	매년300만
		11차년도 계약해당일-21차년도계약해당일의 전일	매년400만	11차년도 계약해당일-21차년도계약해당일의 전일	매년400만
		22차년도 계약해당일이후-	매년500만	21차년도 계약해당일이후-	매년500만

(2) 사망보장형

(가) 주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1 0 0 0 만원	삼성생명 보험가입금액 1 0 0 0 만원	대한생명 보험가입금액 1 0 0 0 만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 0 0 0 만원지급 (단 , 2 년이내 사망시 5 0 % 지급)	1 0 0 0 만원지급	1 0 0 0 만원지급 (단 ,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 년경과 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이전사망시 5 0 % 지급)
재해장해 급여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 1 급 : 1 0 0 0 만원 제 2 급 : 7 0 0 만원 제 3 급 : 5 0 0 만원 제 4 급 : 3 0 0 만원 제 5 급 : 1 5 0 만원 제 6 급 : 1 0 0 만원	제 1 급 : 1 0 0 0 만원 제 2 급 : 7 0 0 만원 제 3 급 : 5 0 0 만원 제 4 급 : 3 0 0 만원 제 5 급 : 1 5 0 만원 제 6 급 : 1 0 0 만원	제 1 급 : 1 0 0 0 만원 제 2 급 : 7 0 0 만원 제 3 급 : 5 0 0 만원 제 4 급 : 3 0 0 만원 제 5 급 : 1 5 0 만원 제 6 급 : 1 0 0 만원
만기보험금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나) 장애인사망특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사망보험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1 0 0 0 만원지급 (단 , 2 년이내 사망시 5 0 % 지급)		1 0 0 0 만원지급 (단 ,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 년경과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이전사망시 5 0 % 지급)

(3) 암보장

(가) 주계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5 0 0 만원기준	삼성생명 보험가입금액 1 0 0 0 만원기준	대한생명 보험가입금액 5 0 0 만원기준
만기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암진단자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 회한함)	1 0 0 0 만원	‘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 : 2 0 0 0 만원 ‘ 기타피부암 ’ : 3 0 0 만원	1 0 0 0 만원

급부 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500만원기준	삼성생명 보험가입금액1000만원기준	대한생명 보험가입금액500만원기준
상피내암진단 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상피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1회한함)	200만원	200만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200만원
암수술자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목 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500만원	수술1회 300만원	300만원 (1회당)
상피내암수술 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이 확정되고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100만원	수술1회 30만원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 종양)	60만원 (1회당)
암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목 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4일이상계속) 3일초과 1일당 5만원 (1회 120일 한도)	(4일이상계속) 3일초과 1일당 5만원 (1회120일 한도)	(4일이상계속) 3일초과 1일당 5만원
상피내암입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 로 입원하였을 때	(4일이상계속) 3일초과 1일당 1만원 (1회 120일 한도)	(4일이상계속) 3일초과 1일당 2만원 (1일1회한함)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보생명 보험가입금액 5 0 0 만원기준	삼성생명 보험가입금액 1 0 0 0 만원기준	대한생명 보험가입금액 5 0 0 만원기준
암통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 회당 3 만원	통원 1 회당 2 만원 (1 일 1 회한함)	3 만원 (1 회당)
상피내암통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때	통원 1 회당 1 만원	통원 1 회당 2 만원 (1 일 1 회한함)	
암간병자금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후	3 1 일 / 6 1 일 / 9 1 일 / 1 2 1 일 경과하였을 때 각 1 0 0 만원	1 2 1 일이상 계속하여 입원 시 1 0 0 만원	3 1 일 / 6 1 일 / 9 1 일 / 1 2 1 일 경과하였을 때 각 1 0 0 만원
상피내암간병 자금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상피내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후	3 1 일 / 6 1 일 / 9 1 일 / 1 2 1 일 경과하였을 때 각 1 0 0 만원		3 1 일 / 6 1 일 / 9 1 일 / 1 2 1 일 경과하였을 때 각 1 0 0 만원

(나) 암사망특약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교보생명	삼성생명	대한생명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또는 1급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 0 0 0 만원	1 0 0 0 만원	1 0 0 0 만원

[자료 2] 인수지침 분석

가. 피보험자자격(SK생명)

- (1) 장해상태가 확정되고 치료행위가 완료된 후 180일이 경과된 자.
- (2) 가입연령 : 만15세-50세

나. 가입한도(SK생명)

등급	최고보험금액	장해급여	질병입원	비고
1급	1억원	1억원	1만원	
2급	1억원	1억원	1만원	
3급	1억원	1억원	1만원	
4급	2억원	2억원	1만원	
5급	4억원	2억원	3만원	
6급	5억원	5억원	3만원	

- * 최고 5억이상건의 경우 선심사 후 계약인수
- * 상해보험 5-6급에서 선별적 인수

(1) 가입한도 세부내용 (SK생명)

등급	항목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1급	1-1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2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3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4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1-5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1-6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1-7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1-8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1-9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2급	2-1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2-2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2-3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2-4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2-5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2-6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등급	항목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3급	3-1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3-2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3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4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5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6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7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8	1억	1억	불가	1만원	1억
	3-9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3-10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급	4-1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2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3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4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5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6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7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등급	항목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4-8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9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0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1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2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3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4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4-15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4-16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급	5-1	2억	2억	불가	불가	2억
	5-2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3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4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5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6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7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8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등급	항목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5-9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10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11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5-12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5-13	2억	2억	불가	3만원	2억
	5-14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5-15	4억	4억	불가	1만원	2억
	5-16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6급	6-1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2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3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4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5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6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7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8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9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등급	항목	일반사망	재해사망	재해입원	질병입원	장해
	6-10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11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12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13	5억	5억	불가	3만원	5억
	6-14	2억	2억	불가	1만원	2억

다. 가입기준

(1) 장애원인별인수기준차별적용(동양생명, 럭키생명)

- 장애 원인이 재해이고 다른 질병이 없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
- 장애 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질병상태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 가입조건 등을 결정

(2) 가입거절(SK생명, 럭키생명, 동양생명)

- 상법(제732조)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이거나 위험 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거절
- 계약무효대상 :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 장해분류표상 인수불가 항목

(3) 장애상태에 따른 계약인수불가대상(삼성생명,SK생명,동양생명,동부생명,알리안츠,매트라이프,푸르덴셜,뉴욕생명)

등급	인수거절신체장애
제1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단, 농아는 인수)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제3급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관탈출증은 제외) (단, 곱추는 인수)
제4급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었을 때 (단, 언어장애는 인수)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약관상의 심신상실자 및 박약자로 간주하여 거절)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단, 고환상실자는 인수)

(4) 기타가입기준(SK생명)

- 상법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이거나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하여 보험 가입거절
- 입원특약 및 입원급부 상품은 가입불가 (질병입원 선별인수)

- 전건 특별진단, 단 장애상태, 장애원인, 치료기간이 명확하거나 손가락, 발가락 장애인 경우는 청약서상의 고지만으로 진단 대체

- 추후 신계약 가입시 동일 장애에 대한 재진 불필요
- 장애등급 분류표상 장애등급 1급-3급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상품 가입불가
- 직업이 무직인자, 자해투신 등의 고의적인 장애자 가입불가
- 청약서 및 진단서상에 장애상태 미고지자 가입불가

라. 장애상태에 따른계약인수기준표(동양생명, 럭키생명)

() : 동양생명

등급	항목	장애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1급	1-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가능(사절)	유진단
	1-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불가	불가
	1-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1-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1-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1-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등급	항목	장애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1-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1-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1-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2급	2-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2-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불가	불가
	2-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2-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2-5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종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에서 제3급의 2내지 7종 또는 제4급의 5내지 11종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2-6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3급	3-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가능(사절)	유진단
	3-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3-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3-4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3-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3-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3-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등급	항목	장애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3-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3-9	척추의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 제외)	불가	불가
	3-10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 의 신체 장애가 있고 다른 한 팔 또는 한 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 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가능(사절)	유진단
4급	4-1	두 눈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사절)	유진단
	4-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불가	불가
	4-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불가	불가
	4-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거나, 양쪽고환을 잃었을 때	불가	불가
	4-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4-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4-7	한 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4-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4-9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4-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등급	항목	장애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4-11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4-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4-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4-14	한 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사절)	유진단
	4-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가능(사절)	유진단
	4-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가능(사절)	유진단
5급	5-1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을 상실할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5-2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5-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5-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9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등급	항목	장애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5-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5-11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5-12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5-13	코가 결손 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5-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가능(사절)	유진단
	5-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5-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가능(사절)	유진단
6급	6-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6-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6-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장애고지)
	6-4	한 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5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 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8	한 손의 첫째 손가락 또는 둘째 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등급	항목	장해내용	인수여부	건강진단
	6-9	한 발의 첫째 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10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가능(대개정상)	무진단(장애고지)
	6-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가능(조건부)	유진단
	6-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6-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가능(대개정상)	유진단
	6-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가능(사절)	유진단

(1) 건강진단기준(장해상태에 따라 진단여부 판단) - 삼성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로 인한 단순 절단장애인 경우 진단면제 : 객관적 식별이 가능한 절단장애 (3급2,4,6-8항목, 4급5-13항목, 5급4-10항목, 6급2-10항목 등 총30개항목) - 질병 및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 진단실시 - 과거 당사 진단결과 확정장해판정을 받은 경우 무진단 실시 - 진단필요시 장애정도의 객관적인 판정을 위해 사의, 지정의 진단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상태에 따라 진단여부 판단 - 재해로 인한 단순 절단장애인의 경우 “신체장애 부위 고지서” 대체 가능 (위의 표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서 대체건이라도 질병장애 또는 진단보험금 한도 초과시에는 진단지시 예정 → 기타 합병증으로 인한 장애의 경우도 진단지시 예정 - 장애진단 유효기간 (6개월적용)
<p>표준미달체시 입원특약 적용</p> <p>: 할증(삭감), 특정부위부담보 판정시 일반인과 동일기준 적용</p>	

(2) 상품별 적용(삼성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동양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처럼 질병정도에 따라 건강진단 후 상품별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조건 등을 결정 (정상 - 거절) - 상해보험의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척추, 요추 등의 부위에 상당한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기간 가입보류 또는 가입불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처럼 질병정도에 따라 건강진단(고지서대체) 후 상품별 가입여부 및 가입한도, 조건 등을 결정 (정상 - 조건부) - 재해장애/ 재해입원 고보장 상품은 장애상태에 따라 개별 적용 - 신체장애 계약은 위험측정이 중요한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개인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마. 장애인전용상품(삼성생명)

(1) 판매근거

- 저금리시대 대비 예정이율 1% 인하 (7.0%→6.0%)
- 암보장형은 현행 암보험과 급부구조 동일 : 암진단, 수술, 통원 등 보장급부 재조정 및 상피내암 지급을 조정

(2) 장애인전용상품가입요건

유형	상품구조	가입요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첨부서류	가입불가항목
소득보장형	부양자(주피) 사망시 장애인(종피)에게 중신생활연금지급	종피보험자의 친족 중 실질적 부양관계에 있는 자 *친족의 범위 8촌이내 부계혈족, 4촌이내 모계혈족, 남편의 8촌이내의 부계혈족, 남편의 4촌이내의 모계혈족, 처의 부모, 배우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이자	장애인등록증 (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국가유공자증	
암보장형	장애인 암발생시 각종 치료비 보장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시,군,구청장 발행) 또는 국가유공자증	1급2-4항목, 2급1-2항목, 3급9항목, 4급2-4항목 : 총 9개항목 - 씹어먹는 기능에 장애를 남겨서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장애인
사망보장형	장애인 사망시 유족보장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이자로서 당사 “신체장애인 인수기준”에 부합하는자			- 흉,복부 장기,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영구히 회복 불가능한 장애인 - 척추에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남겨서 영구히 회복이 불가능한 장애인

유형	상품구조	가입요건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첨부서류	가입불가항목
비고	소득보장형은 주피 보장 상품이므로, 종피는 전건 무진단 (종피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가입가능)				암보장형 가입희망자의 경우 신청약 후입금

2. 손해보험회사인수지침서

입수 여부	회사	장애인인수기준	장애인전용상품	
			장애인전용상품	특징
	교보자동차			
	그린화재			
	대한화재			
입수	동부화재	1. 장애인 인수기준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즉,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담보사항, 가입경력, 과거 질병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산정 하고 인수여부를 결정.	유	

입수 여부	회사	장애인인수기준				장애인전용상품	
						장애인전용상품	특징
입수	동양화재	1. 장애인 인수기준 일반인 인수기준과 비교시 인수에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즉,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운전용도, 담보사항 및 가입금액 등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인수지침 운용중임 2. 상법 제732조에 해당하는 경우 상병 및 약관 무효조항에 따라 불가함.					
입수	삼성화재						
	서울보증보험						
	신동아화재						
	쌍용화재						
입수	엘지화재	직업의 인수규정		전산반영	본부지침		
		1-3급장애자, 척추관련 4-5급,보조기구의탁 및 사용자		금지	금지		
		보조기구의탁 및 착용하지 않는 4-6급 기능장애자(장애인등록증 첨부하여 심의)		본부	본부		
		직업 외 인수규정	인수심의	담보적용			
				일반상해	교통상해	의료담보	질병담보
		언어장애자,후각장애자	본부심의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지체장애(디스크등),시각/청각장애,씹는기능장애,정신지체자	금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입수 여부	회사	장애인인수기준	장애인전용상품								
			장애인전용상품	특징							
입수	제일화재	1. 장애인 인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장애인 관련 인수 기준용</th> <th>인수여부</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지능장애자,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거나 서는 것이 곤란한 자 및 보행 곤란자, 평행기능장애자, 양안실명자, 한쪽눈이 실명되고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가 중복된자, 지체부자유 장애자로 기타장애상태를 겸비한자</td> <td>인수금지</td> <td></td> </tr> <tr> <td>위 인수금지 이외의 신체장애자</td> <td>지점</td> <td>인수기준 -사망후유장애:5만원한도 -의료실비:1백만원한도 -일당:2만원한도 -질병일당:2만원한도</td> </tr> </tbody> </table>	장애인 관련 인수 기준용	인수여부	비고	지능장애자,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거나 서는 것이 곤란한 자 및 보행 곤란자, 평행기능장애자, 양안실명자, 한쪽눈이 실명되고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가 중복된자, 지체부자유 장애자로 기타장애상태를 겸비한자	인수금지		위 인수금지 이외의 신체장애자	지점	인수기준 -사망후유장애:5만원한도 -의료실비:1백만원한도 -일당:2만원한도 -질병일당:2만원한도
장애인 관련 인수 기준용	인수여부	비고									
지능장애자,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거나 서는 것이 곤란한 자 및 보행 곤란자, 평행기능장애자, 양안실명자, 한쪽눈이 실명되고 귀머거리 또는 병어리가 중복된자, 지체부자유 장애자로 기타장애상태를 겸비한자	인수금지										
위 인수금지 이외의 신체장애자	지점	인수기준 -사망후유장애:5만원한도 -의료실비:1백만원한도 -일당:2만원한도 -질병일당:2만원한도									
	코리안리재보험										
입수	현대해상	<p>1. 장애인 관련 인수기준</p> <p>인수심사의 대상으로 신체적 위험도를 평가하나 장애인 이라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거부하지는 않음. 인수하려는 종목과 상당한 상관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일반인과 동일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하며 해당보험과의 상관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직업, 나이, 과거 사고사항 , 담보, 가입금액 등을 적절히 조정, 합의하여 최적의 계약조건을 제시 후 인수함을 원칙으로 함.</p>									

[자료 3] 장애인시설 설문분석 및 설문지

1. 장애인 시설에 관한 설문 분석

가. 설문 대상의 수

시 설	배포된 설문지 (이메일, 팩스)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소속 복지시설	527	60	11.39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협회, 조기교육기관)	137	14	10.22
총계	604	74	12.25

나. 설문에 응답한 장애시설의 종류

시설	시설 수	%
장애인생활시설	39	52.7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0	13.51
장애인요양시설	11	14.86
특수학교	14	18.92

다. 본 설문내용 및 응답

1.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시설수	%
예	71	95.95
아니오	3	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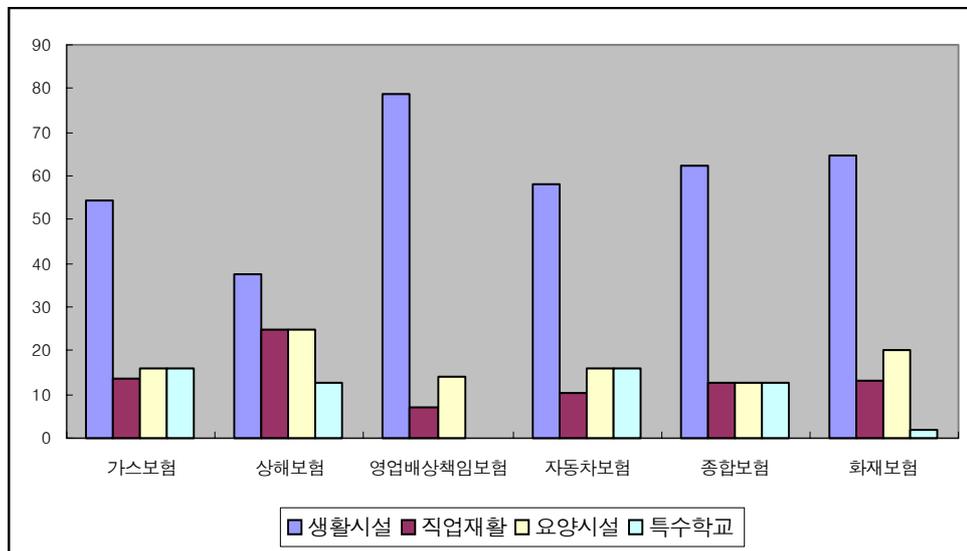
2. (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답변해주세요)

2-1.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상품명과 가입한 보험회사를 기재하여 주시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상품명	시설수	%
가스보험	44	25.58
고용보험	1	0.58
대물보험	1	0.58
대인보험	2	1.16
보증보험	2	1.16
산재보험	1	1.74
상해보험	8	4.65
생명보험	1	0.58
여행자보험	2	1.16
(영업)배상책임보험	14	8.14
운전자보험	3	1.74
자동차보험	19	11.04
종합보험	8	4.65
화재보험	54	31.40
학교안전(재해)공제회	12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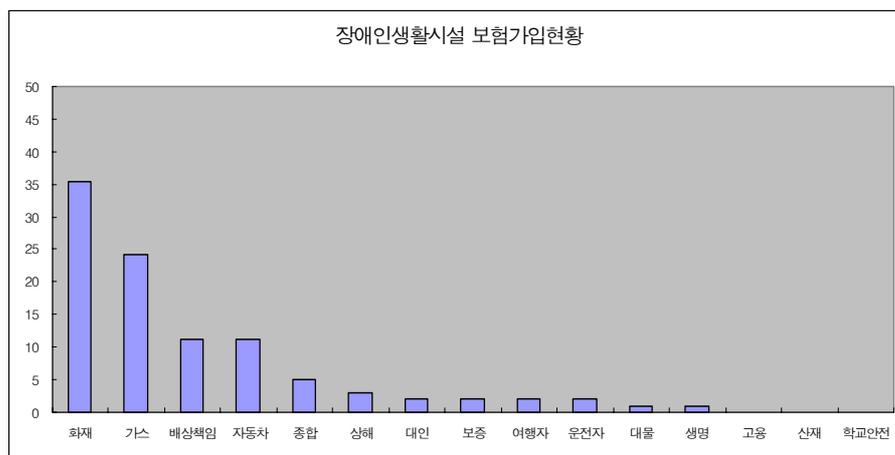
◆ 보험상품별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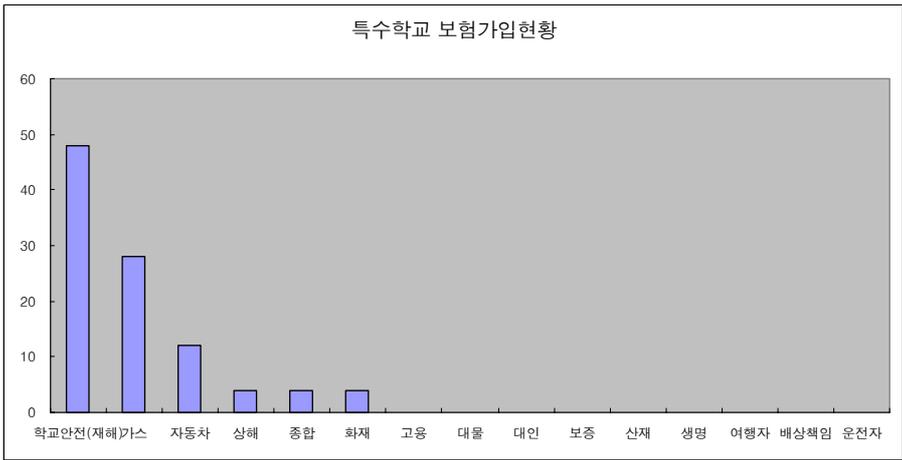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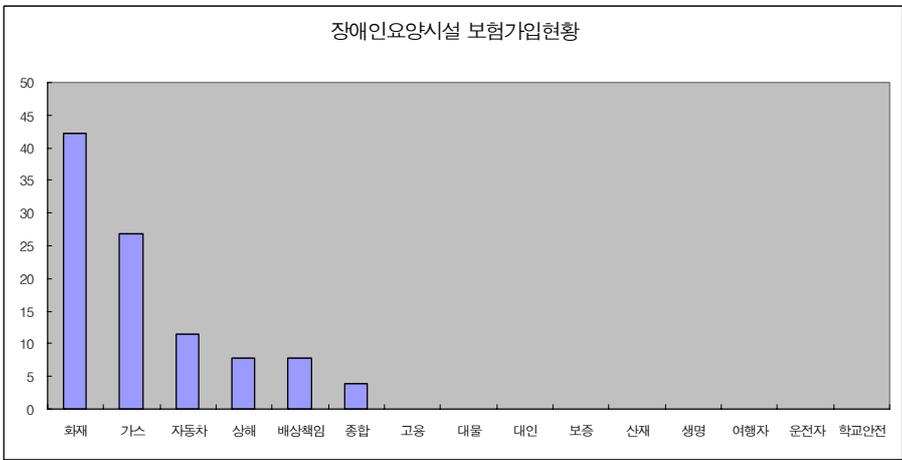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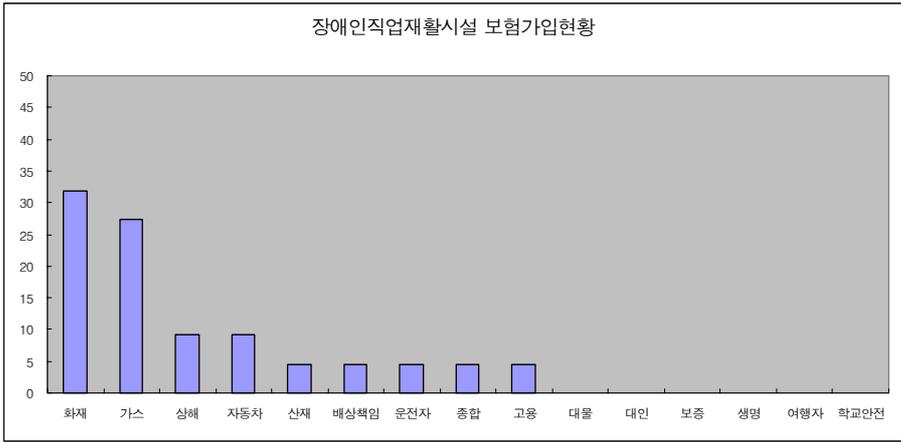
상품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보험상품별 가입건수
가스보험	24(54.44%)	6 (13.64%)	7(15.91%)	7(15.91%)	44
고용보험		1 (100%)			1
대물보험	1 (100%)				1
대인보험	2 (100%)				2
보증보험	2 (100%)				2
산재보험		1 (100%)			1
상해보험	3 (37.5%)	2 (25%)	2 (25%)	1 (12.5%)	8
생명보험	1 (100%)				1
여행자보험	2 (100%)				2
(영업)배상책임보험	11 (78.57)	1 (7.14%)	2 (14.29%)		11
운전자보험	2 (66.6%)	1 (33.33%)			3
자동차보험	11(57.89%)	2 (10.53%)	3 (15.79%)	3 (15.79%)	19
종합보험	5 (62.5%)	1 (12.5%)	1 (12.5%)	1 (12.5%)	8
화재보험	35(64.81%)	7 (12.96%)	11(20.37%)	1 (1.85%)	54
학교안전(재해)보험				12 (100%)	12



◆ 시설별 보험가입현황

상품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가스보험	24 (24.24%)	6 (27.27%)	7 (26.92%)	7 (28%)
고용보험	0 (0%)	1 (4.55%)	0 (0%)	0 (0%)
대물보험	1 (1.01%)	0 (0%)	0 (0%)	0 (0%)
대인보험	2 (2.02%)	0 (0%)	0 (0%)	0 (0%)
보증보험	2 (2.02%)	0 (0%)	0 (0%)	0 (0%)
산재보험	0 (0%)	1 (4.55%)	0 (0%)	0 (0%)
상해보험	3 (3.03%)	2 (9.09%)	2 (7.69%)	1 (4%)
생명보험	1 (1.01%)	0 (0%)	0 (0%)	0 (0%)
여행자보험	2 (2.02%)	0 (0%)	0 (0%)	0 (0%)
(영업)배상책임보험	11 (11.11%)	1 (4.55%)	2 (7.69%)	0 (0%)
운전자보험	2 (2.02%)	1 (4.55%)	0 (0%)	0 (0%)
자동차보험	11 (11.11%)	2 (9.09%)	3 (11.54%)	3 (12%)
종합보험	5 (5.05%)	1 (4.55%)	1 (3.85%)	1 (4%)
화재보험	35 (35.35%)	7 (31.82%)	7 (42.31%)	1 (4%)
학교안전(재해)	0 (0%)	0 (0%)	0 (0%)	12 (48%)
시설별 가입 보험 총계	99	22	26	25





2-2. 화재보험 또는 가스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배상 이외에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까? (보험가입시설 71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예	50	70.42
아니오	19	26.76
무응답	2	2.82

◆ 시설별 현황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예	26(66.67%)	6 (60%)	8 (72.73%)	10(90.91%)
아니오	12(30.77%)	3 (30%)	3 (27.27%)	1 (9.09%)
무응답	1 (2.56%)	1 (10%)	0 (0%)	0 (0%)

2-2-1. (전항에서 아니오로 답변한 시설만) 대인배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인배상특약 미가입시설 19개 대상)

답변	시설수	%
가입신청하지 않음	8	42.11
가입거절당함	7	36.84
기타	1	5.26
무응답	3	15.79

◆ 시설별 현황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예	26(66.67%)	6 (60%)	8 (72.73%)	10(90.91%)
아니오	12(30.77%)	3 (30%)	3 (27.27%)	1 (9.09%)
무응답	1 (2.56%)	1 (10%)	0 (0%)	0 (0%)

“가입신청하지 않음”의 이유

- 2개 시설 : 높은 보험료
- 1개 시설 : 대인보험 가입

2-3. 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보험가입시설 71개 대상,복수 응답가능)

답변	시설수	%
증빙서류의 준비	5	6.41
까다로운 심사절차	15	19.23
일반시설 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11	14.1
기타	0	0
무응답	47	60.26

2-4.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시설임을 알았거나,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보험가입시설 71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알았다	64	90.14
알지 못하였다	0	0
보험설계사만 알고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0	0
무응답	7	9.86

2-5. 귀 시설에서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 본 적이 있습니까?
(보험가입시설 71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예	3	4.23
아니오	68	95.77
무응답	0	0

2-5-1.(보험금을 타보았던 시설만)귀 시설이 탄 보험금의 액수는 걱정했습니까?
(보험금 받은 시설 3개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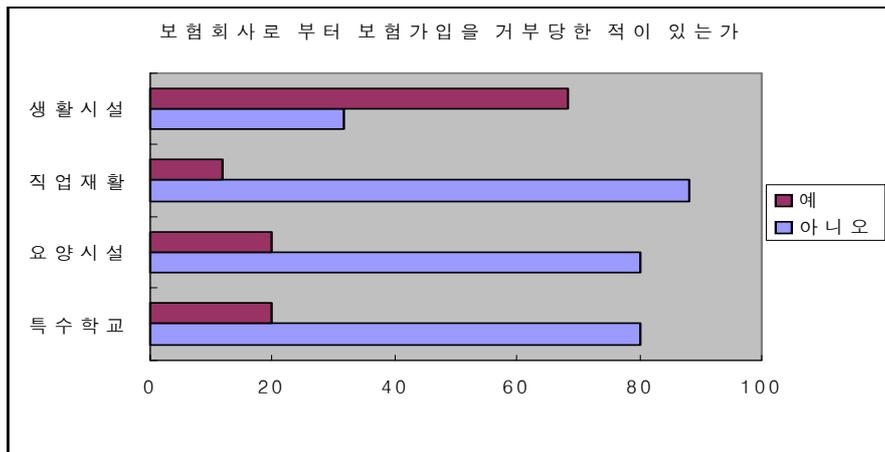
답변	시설수	%
적정했다	3	100
적었다	0	0
무응답	0	0

3. 귀 시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응답시설 74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예	20	27.03
아니오	45	60.81
주의에서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다	2	2.70
무응답	7	9.46

◆ 시설별 현황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예	13 (68.42%)	3 (12%)	3 (20%)	2 (20%)
아니오	6 (31.58%)	22 (88%)	8 (80%)	9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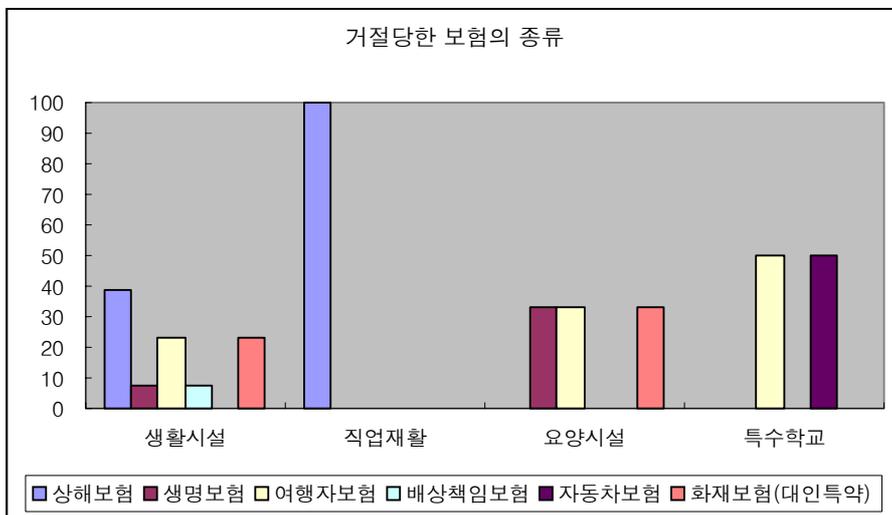


3-1.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시설만) 가입을 거절당한 보험은 어떤 보험이었습니까?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시설 20개 대상, 복수응답가능)

상품	시설수	%
상해보험	6	31.58
생명보험	2	10.53
여행자보험	5	26.32
배상책임보험	1	5.26
자동차보험	1	5.26
화재보험(대인특약)	4	21.05

◆ 시설별 현황

상품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상해보험	5 (38.46%)	1 (100%)	0 (0%)	0 (0%)
생명보험	1 (7.69%)	0 (0%)	1 (33.33%)	0 (0%)
여행자보험	3 (23.08%)	0 (0%)	1 (33.33%)	1 (50%)
배상책임보험	1 (7.69%)	0 (0%)	0 (0%)	0 (0%)
자동차보험	0 (0%)	0 (0%)	0 (0%)	1 (50%)
화재보험(대인특약)	3 (23.08%)	0 (0%)	1 (33.33%)	0 (0%)



3-2.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다가?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시설 20개 대상, 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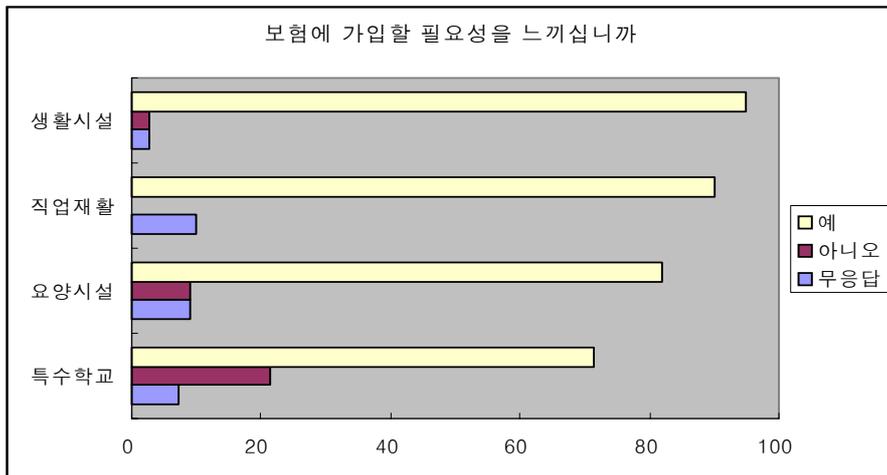
답변	시설수	%
높은 위험부담 (장애인·장애인 시설을 이유로)	18	85.71
장애인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특히 정신지체장애)	2	9.52
높은 보험료 때문에 포기 (해당 시설)	1	4.76

4.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설문응답시설 74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예	65	87.84
아니오	5	6.76
무응답	4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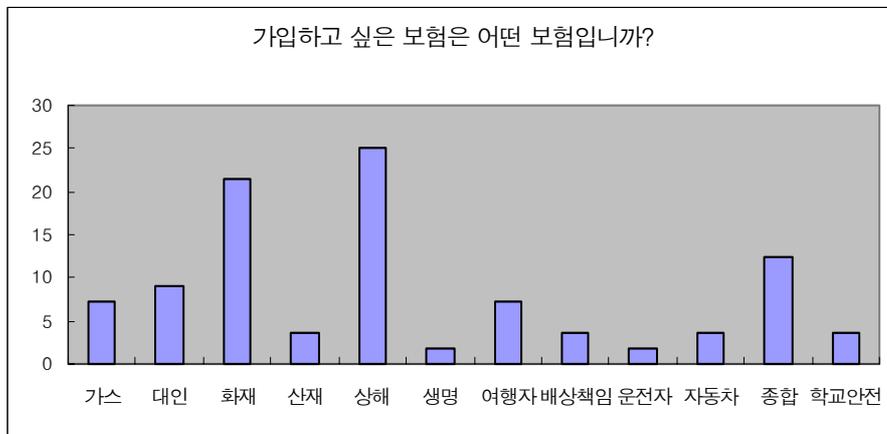
◆ 시설별 현황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예	37(94.87%)	9 (90%)	9 (81.82%)	10(71.43%)
아니오	1 (2.56%)	0 (0%)	1 (9.09%)	3 (21.43%)
무응답	1 (2.56%)	1 (10%)	1 (9.09%)	1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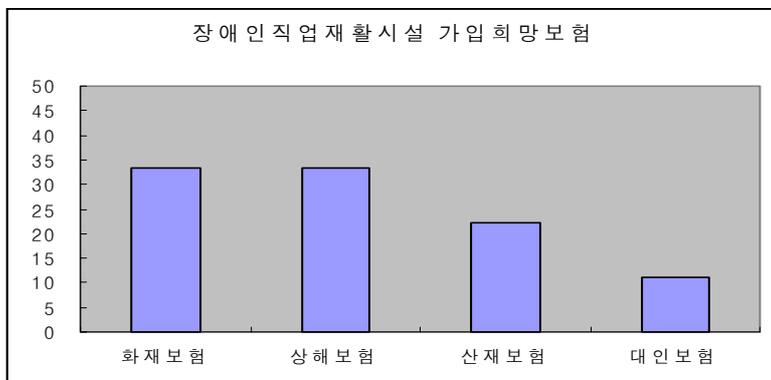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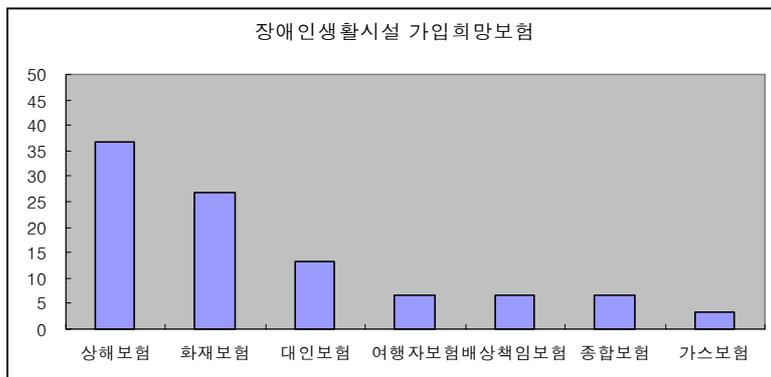
4-1.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만) 귀 시설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설 65개 대상, 복수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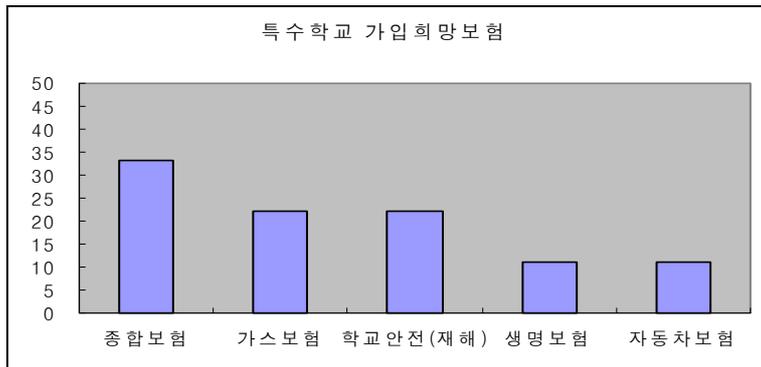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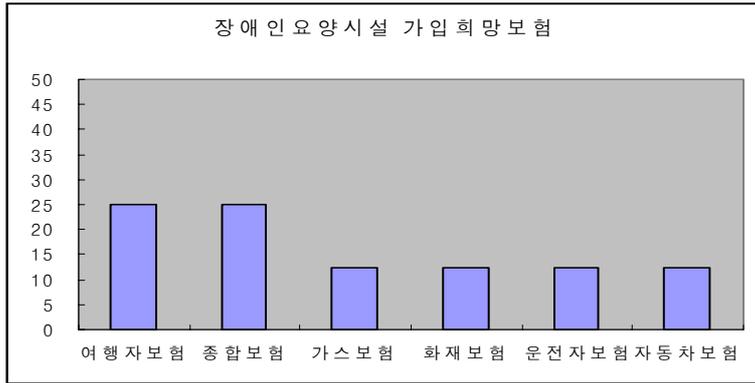
상품	시설수	%
가스보험	4	7.14
대인보험	5	8.93
화재보험(대인특약포함)	12	21.43
산재보험	2	3.57
상해보험	14	25
생명보험	1	1.79
여행자보험	4	7.14
영업배상책임보험	2	3.57
운전자보험	1	1.79
자동차보험	2	3.57
종합보험, 안전보험	7	12.5
학교안전(재해)보험	2	3.57



◆ 시설별 현황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가스보험	1 (3.33%)	0 (0%)	1 (12.5%)	2 (22.22%)
대인보험	4 (13.33%)	1 (11.11%)	0 (0%)	0 (0%)
화재보험	8 (26.67%)	3 (33.33%)	1 (12.5%)	0 (0%)
산재보험	0 (0%)	2 (22.22%)	0 (0%)	0 (0%)
상해보험	11 (36.67%)	3 (33.33%)	0 (0%)	0 (0%)
생명보험	0 (0%)	0 (0%)	0 (0%)	1 (11.11%)
여행자보험	2 (6.67%)	0 (0%)	2 (25%)	0 (0%)
배상책임보험	2 (6.67%)	0 (0%)	0 (0%)	0 (0%)
운전자보험	0 (0%)	0 (0%)	1 (12.5%)	0 (0%)
자동차보험	0 (0%)	0 (0%)	1 (12.5%)	1 (11.11%)
종합보험	2 (6.67%)	0 (0%)	2 (25%)	3 (33.33%)
학교안전(재해)	0 (0%)	0 (0%)	0 (0%)	2 (22.22%)





4-2.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시설수	%
가입대상에서 제외 (혹은 거부)	5	16.13
높은 보험료 책정	15	48.39
예산부족	11	35.48
없음	0	0

5.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응답시설 74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예	2	2.70
아니오	67	9.54
주의에서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다	0	0
무응답	5	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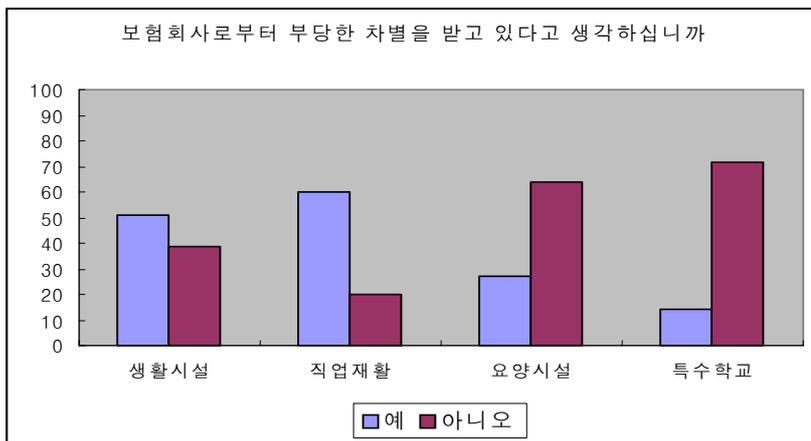
5-1. (해지 당한 경험이 있는 시설만)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 귀하는 장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설수	%
예	31	41.89
아니오	34	45.95
무응답	9	12.16

◆ 시설별 현황

답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요양시설	특수학교
예	20 (51.28%)	6 (60%)	3 (27.27%)	2 (14.29%)
아니오	15 (38.46%)	2 (20%)	7 (63.64%)	10 (71.43%)
무응답	4 (10.26%)	2 (20%)	1 (9.09%)	2 (14.29%)



6-1.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떤 점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시설 31개 대상, 주관식)

답변	시설수	%
가입대상에서 제외 (혹은 거부)	10	25.81
높은 보험료 책정	2	6.45
무응답	19	67.74

◆ 가입대상에서 제외 (혹은 거부) 관련 의견

- 생명보험의 경우 장애로 인한 사망률이 높다고 주장하며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일반인과 차별
-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장애인에게 그대로 적용하여 위험도 높다는 이유로 거부
- 장애영역에 따라 위험도 차이가 있을 텐데, 무조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
- 장애인은 선택된 보험영역에서만 가입가능(정신지체장애의 경우 개인연금보험 등 불가)
- 특히 여행자보험의 경우 장애시설이라는 이유로 가입대상에서 제외

7. 귀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응답시설 74개 대상)

답변	시설수	%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	48	64.86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전용보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18	24.32
잘 모르겠다	6	8.11
무응답	2	2.70

8. 장애인 관련 보험에 대한 그밖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보험이 있었으면 한다.
- 보험과 별개의 보장제도가 있었으면 한다.
- 장애를 세분화하여 적은 보험료로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면 한다.
- 장애를 이유로 혹은 더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기피사례가 발생한다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에 대한 보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사회적 보험제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애인도 일반인에 준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 장애인에게는 특히 더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회사들이 높은 위험부담(낮은 수익률)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입가능한 보험상품이 거의 없다
- 장애인의 경우 사고보상금액이 적다.
- 장애인의 경우 질병, 상해 등에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사의 손실가능성을 대손하더라도 필수적으로 장애인 전용보험상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의료비관련 본인부담분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한다.
- 장애상황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변의 여러가지 상황(위험을 줄여주는 보호상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장애인 시설 설문지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보험과 장애인 및 복지시설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 시설은 어떤 시설인가요? ()
- 귀 시설은 어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여러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
- 귀 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 ① 교육 관련 ()
 - ② 의료재활 관련 ()
 - ③ 직업재활 관련 ()
 - ④ 생활시설(입소) ()
 - ⑤ 이용시설 ()
 - ⑥ 기타 ()

* 해당되는 괄호 안에 ○ 표시를 하시거나, 생각나는 답변을 모두 적어주세요.

1.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 (보험에 가입한 경우만 답변해주세요)

2-1. 어떤 보험에 가입하였습니까? (상품명과 가입한 보험회사를 기재하여 주시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으면 모두 적어주세요)

2-2. 화재보험 또는 가스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배상 이외에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특약도 함께 가입하였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2-1. (전항에서 아니오로 답변한 시설만) 대인배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음 ()
② 가입하려고 했으나 장애인 시설임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함 ()
③ 기타 ()

2-3. 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증빙서류의 준비 ()
② 까다로운 심사절차 ()
③ 일반 시설 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
④ 그밖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2-4.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시설임을 알았거나, 피보험자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 ① 알았다. () ② 알지 못하였다. () ③ 보험설계사만 알고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

2-5. 귀 시설에서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5-1. (보험금을 타보았던 시설만)귀 시설이 탄 보험금의 액수는 적정했습니까?

- ① 적정했다. ()
② 적었다. ()
적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3. 귀 시설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주위에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있다. ()

3-1. (보험가입을 거절당한 시설만) 가입을 거절당한 보험은 어떤 보험이었습니까? (상품명과 보험회사를 기재하여 주세요)

3-2.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4.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4-1.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만) 귀 시설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4-2.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5. 귀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주위에 그런 시설을 본 적이 있다. ()

5-1. (해지 당한 경험이 있는 시설만)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 귀하는 장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6-1. (예라고 답변한 경우) 어떤 점에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귀하는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 ()
②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전용보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③ 잘 모르겠다. ()

8. 장애인 관련 보험에 대한 그밖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자료 4] 장애인 설문 분석 및 설문지

1. 장애인에 관한 설문 분석

가.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

유형	응답장애인	%
지체장애	56	49.56
뇌병변장애	4	3.54
시각장애	5	4.42
청각장애	41	36.28
언어장애	1	0.88
신장장애	2	1.77
심신장애	1	0.88
중복장애	1	0.88
무응답	2	1.77
총 계	113	

나. 설문에 응답한 장애인의 장애 유형

유형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지체장애	56	8 (7.08%)	10(8.85%)	18(15.93%)	9 (7.96%)	7 (6.19%)	4 (3.54%)
뇌병변장애	4		2 (1.77%)	1 (0.88%)	1 (0.88%)		
시각장애	5	1 (0.88%)	1 (0.88%)			2 (1.77%)	1 (0.88%)
청각장애	41	1 (0.88%)	38(33.63%)	1 (0.88%)		1 (0.88%)	
언어장애	1			1 (0.88%)			
신장장애	2		2 (1.77%)				
심신장애	1			1 (0.88%)			
중복장애	1	1 (0.88%)					
무응답	2	1 (0.88%)	1 (0.88%)				
총 계	113	12(10.62%)	54(47.79%)	22(19.47%)	10(8.85%)	10(8.85%)	5 (4.42%)

다. 본 설문 내용 및 응답

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예	81	71.68
아니오	32	28.32

2. 귀하가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보험가입 장애인 81명 대상, 복수응답가능)

상품	응답장애인	%
자동차보험	49	30.82
상해보험	17	10.69
종신보험	8	5.03
연금보험	25	15.72
건강보험	40	25.16
교육보험	4	2.52
재해보장보험	5	3.14
여행보험	1	0.63
장애인전용 곰두리보험	5	3.14
기타	5	3.14

◆ 장애유형별 보험가입 현황

상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신장애	중복장애	무응답
자동차보험	26(29.21%)		2 (40%)	17(32.08%)	1 (100%)	1 (25%)	1 (100%)	1 (50%)	
상해보험	11(12.36%)			5 (9.43%)		1 (25%)			
중신보험	6 (6.74%)			2 (3.77%)					
연금보험	11(12.36%)		1 (20%)	11(20.75%)		1 (25%)		1 (50%)	
건강보험	23(25.84%)	2(100%)	2 (40%)	11(20.75%)		1 (25%)			1(50%)
교육보험	2 (2.25%)			2 (3.77%)					
재해보장	4 (4.49%)			1 (1.89%)					
여행보험									1(50%)
장애인전용 골두리보험	2 (2.25%)			3 (5.66%)					
기타	4 (4.49%)			1 (1.89%)					
총계	89	2	5	53	1	4	1	2	2

3. 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보험가입 장애인 81명 대상)

답변	응답장애인	%
증빙서류의 준비	11	13.58
보험계약 전 신체검사의 요구	29	35.80
일반인 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9	11.11
까다로운 심사절차	20	24.69
기타	12	14.81

3-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 당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예	17	15.04
아니오	54	47.79
주위에서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다	19	16.81
무응답	23	20.35

3-2.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③번으로 응답한 장애인 36명 대상)

년도	응답장애인	%
1996년-1997년	4	11.11
1998년-1999년	4	11.11
2000년-2001년	1	2.78
2002년-	1	2.78
무응답	26	72.22

4. 귀하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예	94	83.19
아니오	19	16.81

5. 귀하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복수응답가능)

상품	응답장애인	%
자동차보험	13	7.47
상해보험	12	6.9
종신보험	21	12.07
연금보험	33	18.97
건강보험	41	23.56
교육보험	10	5.75
재해보장보험	14	8.05
여행보험	10	5.75
장애인전용 곰두리보험	15	8.62
기타	5	2.87

◆ 장애유형별 가입희망 보험 종류

상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신장애	중복장애
자동차보험	4 (4.49%)		1 (10%)	7 (10.61%)			1 (50%)	
상해보험	6 (6.74%)		1 (10%)	5 (7.58%)				
종신보험	13(14.6%)	1 (25%)	2 (20%)	4 (6.06%)		1 (100%)		
연금보험	19(21.35%)		1 (10%)	13(19.7%)				
건강보험	17(19.1%)	3 (75%)	2 (20%)	16(24.24%)	1 (100%)		1 (50%)	1 (100%)
교육보험	3 (3.37%)		1 (10%)	6 (9.09%)				
재해보장보험	8 (9%)		1 (10%)	5 (7.58%)				
여행보험	5 (5.62%)		1 (10%)	4 (6.06%)				
장애인전용 골두리보험	10(11.24%)			5 (7.58%)				
기타	4 (4.49%)			1 (1.51%)				
총계	89	4	10	66	1	1	2	1

6. 귀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예	25	22.12
아니오	59	52.21
주위에서 그런 사실을 본 적이 있다	15	13.27
무응답	14	12.39

6-1.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③번으로 응답한 장애인 40명 대상)

답변	응답장애인	%
귀하의 신체장애	31	77.5
기타	2	5
무응답	7	17.5

7. 그밖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장애인이라고 특별히 사고 발생율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됨
- 장애인에 대한 편견, 일반인들과 차별 질의 차이
- 직접 겪은 일은 아니지만 모집인의 권유로 신청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예가 있다.
- 특히 장애인전용보험이라는 상품이 있다는 것조차도 홍보부족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일반보험사는 이 보험의 가입신청을 상당히 꺼려했다.
- 장애인단서류제출요구(현재소지하고 있는 복지카드로 제시하면 되는데..)
- 장애가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아예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했었음
- 장애인이기때 매번 신체검사(건강진단)이 필요하고 보장액의 절반밖에 보장이 안된다
- 장애를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하는 일에 대하여
- 종신보험 가입시 특약사항인 재해상해, 재해사망시 보상부분이 특별한 기준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전혀 보장되지 않는 점
-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예: 장애부분에 대한 제외 보상)

8. 장애인 전용보험에 관하여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예	43	38.05
아니오	66	58.41
무응답	4	3.54

8-1.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응답장애인	%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	41	36.28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전용보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25	22.12
잘 모르겠다	41	36.28
무응답	6	5.31

9. 귀하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 본 적이 있습니까?

(보험가입 장애인 81명 대상)

답변	응답장애인	%
예	15	18.52
아니오	66	81.48

9-1. 귀하가 탄 보험금의 액수는 적정했습니까? (보험금 받은 장애인 15명 대상)

답변	응답장애인	%
적정했다	6	40
일반인들에 비해 적었다	6	40
무응답	3	20

2. 장애인 설문지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보험과 장애인과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 귀하의 나이는? ()세
- 귀하의 직업은? ()
- 귀하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십니까? ()
- 귀하의 장애등급은 몇 급입니까? ()급

* 해당되는 괄호 안에 ○ 표시를 하시거나, 생각나는 답변을 적어주세요.

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2.(보험에 가입하신 분만 답변하세요)

귀하가 가입하신 보험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개면 모두 ○ 표시)

- ① 자동차보험 ()
- ② 상해보험 ()
- ③ 종신보험 ()
- ④ 연금보험 ()
- ⑤ 건강보험(암보험, 기타 질병보험) ()
- ⑥ 교육보험 ()
- ⑦ 재해보장보험 ()
- ⑧ 여행보험 ()
- ⑨ 장애인전용 곰두리보험 ()

⑩ 기타 ()

3. (보험에 가입하신 분만 답변하세요)

보험에 가입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 ① 증빙서류의 준비 ()
- ② 보험계약 전 신체검사의 요구 ()
- ③ 일반인 보다 높은 보험료 책정 ()
- ④ 까다로운 심사절차 ()
- ⑤ 기타

3-1. 귀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 ③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3-2. (①, ③번으로 답한 사람만)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년경)

4. 귀하는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5. 귀하가 가입하고 싶은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 ① 자동차보험 ()
- ② 상해보험 ()
- ③ 종신보험 ()
- ④ 연금보험 ()
- ⑤ 건강보험(암보험, 기타 질병보험) ()
- ⑥ 교육보험 ()
- ⑦ 재해보장보험 ()

- ⑧ 여행보험 ()
- ⑨ 장애인전용 곰두리보험 ()
- ⑩ 기타 ()

6. 귀하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 ③ 주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

6-1.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귀하의 신체장애 ()
- ② 기타

7. 그밖에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8. 장애인 전용보험에 관하여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8-1.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장애인을 위한 상품이므로 환영한다. ()
- ② 장애인과 일반인을 구별하여 굳이 장애인전용보험을 만들 필요는 없다.()
- ③ 잘 모르겠다. ()

9. (보험에 가입한 분들만 답변하세요)

귀하는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 ② 아니오 ()

9-1. 귀하가 탄 보험금의 액수는 적정했습니까?

① 적정했다. ()

② 일반인들에 비하여 적었다. ()

[자료 5] 보험회사 직원 의식조사

장애인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사의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2002. 12. 05

목 차

제 1 부. 조사 개요	2
제 2 부. 조사 결과	5
1.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6	
2.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성 /9	
3. 장애인 보험 가입을 요청 받은 경험 여부 /13	
4. 장애인이 보험 가입 요청 시 거절 의향 분석 /16	
5. 장애인 보험 인수 허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 /21	
6. 일반인 대비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인식도 /24	
제 3 부. 종합적인 결론	29
첨 부. 1. Cross Table 통계표	
2. 기초 통계표	
3. 장애인 보험에 대한 전화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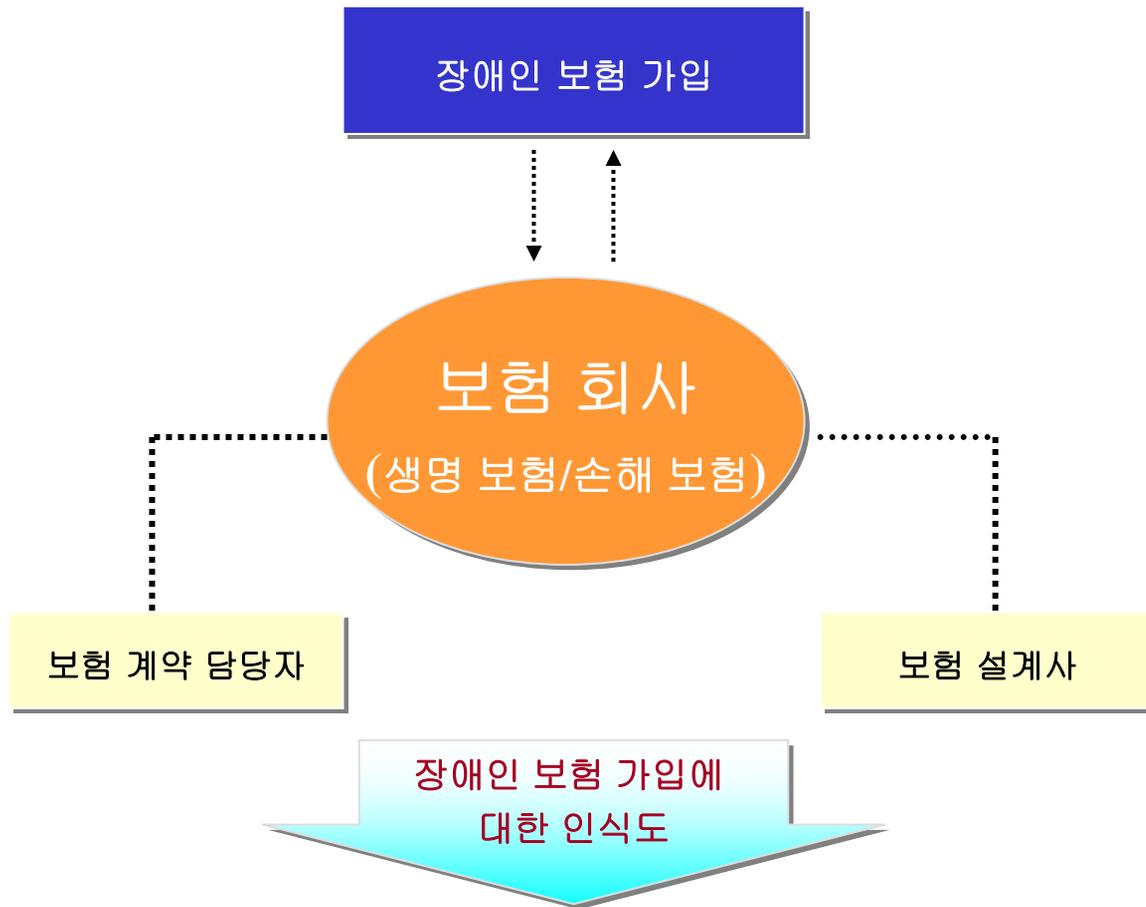


조사 개요

- 조사의 목적 및 설계

-

1. 조사의 목적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회사의 가입 실태 등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2. 본 조사의 구체적인 설계

2-1. 장애인 보험 가입에 대한 보험사 인식 조사 설계

조사 방법

- 전화 조사

조사 지역

- 서울지역 및 수도권

조사 대상

- 보험회사 보험 계약 담당자 또는 보험 설계사

조사 표본

- 총 100표본 (생명 보험회사 : 62표본, 화재 보험회사 : 38표본)

구분		소계	보험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10	2	8
	교보생명	11	5	6
	대한생명	11	5	6
	SK생명	7	6	1
	AIG생명	7	4	3
	Met Life	7	7	0
	ING생명	9	6	3
화재보험사	삼성화재	11	6	5
	현대해상	9	8	1
	동부화재	10	8	2
	LG화재	8	7	1
계		100	64	36

실사 기간

- 2002년 11월 20일 - 1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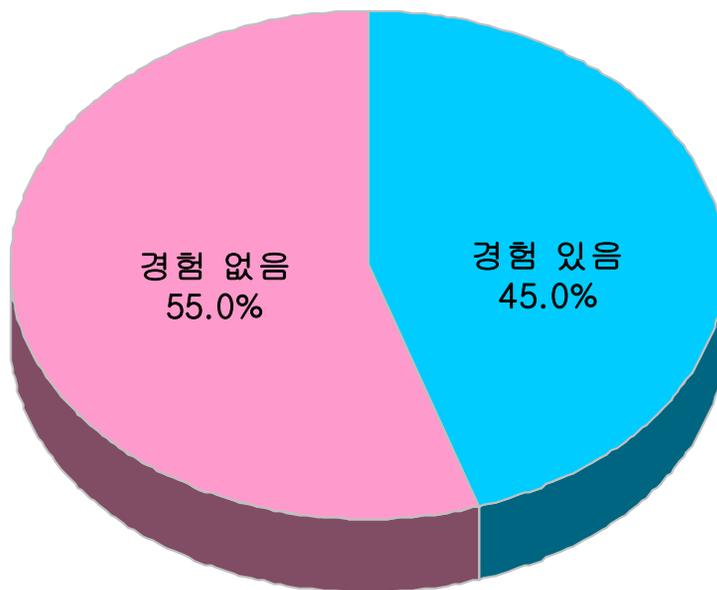


조사 결과

1.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여부

1.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비율

✦ 전체 응답자의 55%가 장애인 대상 보험을 취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45%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Base = (100) / 단위 = %]

1-1. 회사별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 비율

- 교보생명 소속의 응답자들은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이 높은 반면, LG화재, SK생명, 삼성생명은 취급 경험이 낮음
- 화재보험사의 장애인 대한 보험 취급 경험 비율이 57.9%로 생명 보험회사에 비해 다소 높음

	취급	미 취급
삼성생명 (10)	30.0%	70.0%
교보생명 (11)	72.7%	27.3%
대한생명 (11)	54.5%	45.5%
SK생명 (7)	28.6%	71.4%
AIG생명 (7)	42.9%	57.1%
Met life (7)	42.9%	57.1%
ING생명 (9)	44.4%	55.6%
삼성화재 (11)	54.5%	45.5%
현대해상 (9)	44.4%	55.6%
동부화재 (10)	50.0%	50.0%
LG화재 (8)	12.5%	87.5%

생명 보험회사 (62)

(취급 경험비율) (미 취급 경험비율)
(46.8%) < (53.2%)

화재 보험회사 (38)

(취급 경험비율) (미 취급 경험비율)
(42.1%) < (57.9%)

< Base = () / 단위 = % >

1-2.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 비율

- ▶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 비율은 보험설계사가 47.2%로 보험계약 담당자 보다 높게 나타남
- ▶ 대한생명, 삼성화재의 보험설계사가 비교적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비율이 높음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 비율

	취급 경험 이 없다	취급 경험 이 있다
보험계약 담당자 (64)	56.2%	43.8%
보험설계사 (36)	52.8%	47.2%



회사별 담당 업무자의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 비율 (45)

	계약담당자	보험설계사
삼성생명 (3)	66.7%	33.3%
교보생명 (8)	50.0%	50.0%
대한생명 (6)	33.3%	66.7%
SK생명 (2)	100.0%	
AIG생명 (3)	66.7%	33.3%
Met life (3)	100.0%	
ING생명 (4)	75.0%	25.0%
삼성화재 (6)	33.4%	66.7%
현대해상 (4)	75.0%	25.0%
동부화재 (5)	80.0%	20.0%
LG화재 (1)	100.0%	

< Base = () / 단위 = % >

2.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성

2. 장애인의 보험가입 용이성 및 가입 어려움에 대한 이유

- 전체 응답자의 54%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일반인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함.
- 보험가입의 어려운 이유는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절차가 까다롭다” 것이 주 이유임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 보험 가입 용이성



< Base = (100) / 단위 = % >

어려운 경우의 구체적인 이유 (54)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77.8%
가입 자체가 어렵다	14.8%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5.6%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이 낮다	5.6%
특약 부분에 제약이 많다	1.9%

< Base = () / 단위 = % >

2-1. 장애인에 대한 보험 가입 용이성

- 장애인 보험 가입 용이성에 있어서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56.4%) 경험자 보다 장애인 보험이 더 어렵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
-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가입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장애인 보험 가입을 어려워 하는 반면, 취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입 자체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음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에 따른 보험 가입 용이성

		일반인과 똑같다	일반인 보다 어렵다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	있다	48.9%	51.1%
	없다	43.6%	56.4%

< Base = (100) / 단위 = % >

보험가입 경험이 있는 경우 어려운 이유 (23)

가입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82.6%
가입 자체가 어렵다	8.7%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은 낮다	8.7%

보험가입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운 이유 (31)

가입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71.0%
가입 자체가 어렵다	19.4%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은 낮다	3.2%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가격이 비쌌다	3.2%
특약부분에 제약이 많다	3.2%

< Base = () / 단위 = % >

2-2. 회사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용이성

- SK생명, AIG생명, Met Life, ING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소속의 응답자들이 장애인 보험 가입이 일반인에 비해 어렵다고 생각함
- 화재보험과 생명보험에 있어서 장애인 보험 가입 생각의 차이는 크지 않음

	일반인과 똑같다	일반인 보다 어렵다
삼성생명 (10)	60.0%	40.0%
교보생명 (11)	54.5%	45.5%
대한생명 (11)	72.7%	27.3%
SK생명 (7)	28.1%	71.9%
AIG생명 (7)	28.1%	71.9%
Met Life (7)	28.1%	71.9%
ING생명 (9)	33.3%	66.7%
삼성화재 (11)	36.4%	63.6%
현대해상 (9)	44.4%	55.6%
동부화재 (10)	50.0%	50.0%
LG화재 (8)	50.0%	50.0%

생명 보험회사 (62)

일반인에 비해 어렵다 53.2%

화재 보험회사 (38)

일반인에 비해 어렵다 55.3%

< Base = () / 단위 = % >

2-3.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용이성

- ▶ 담당 업무에 따른 장애인 보험 가입의 용이성은 보험설계사가 (55.6%) 비교적 어렵다는 생각을 가짐
- ▶ 보험 계약 담당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가입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장애인 보험가입을 어려워 하는 반면, 보험설계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입 자체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음

담당 업무자에 따른 장애인 보험 가입 용이성

	일반인과 똑같다	일반인 보다 어렵다
보험계약 담당자	46.9%	53.1%
보험설계사	44.4%	55.6%

< Base = (100) / 단위 = % >

보험계약 담당자의 경우 어려운 이유 (34)

가입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79.4%
가입 자체가 어렵다	11.8%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가격이 비쌌다	2.9%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은 낮다	2.9%
특약부분에 제약이 많다	2.9%

보험 설계사의 경우 어려운 이유 (20)

가입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까다롭다	70.0%
가입 자체가 어렵다	20.0%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은 낮다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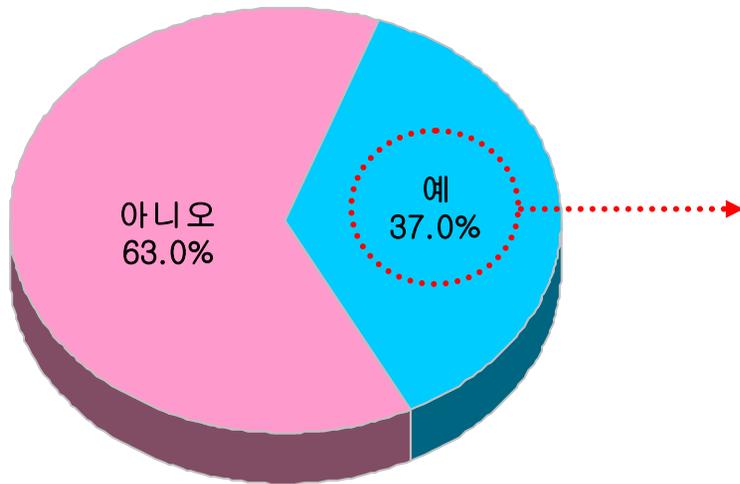
< Base = () / 단위 = % >

3.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여부

3.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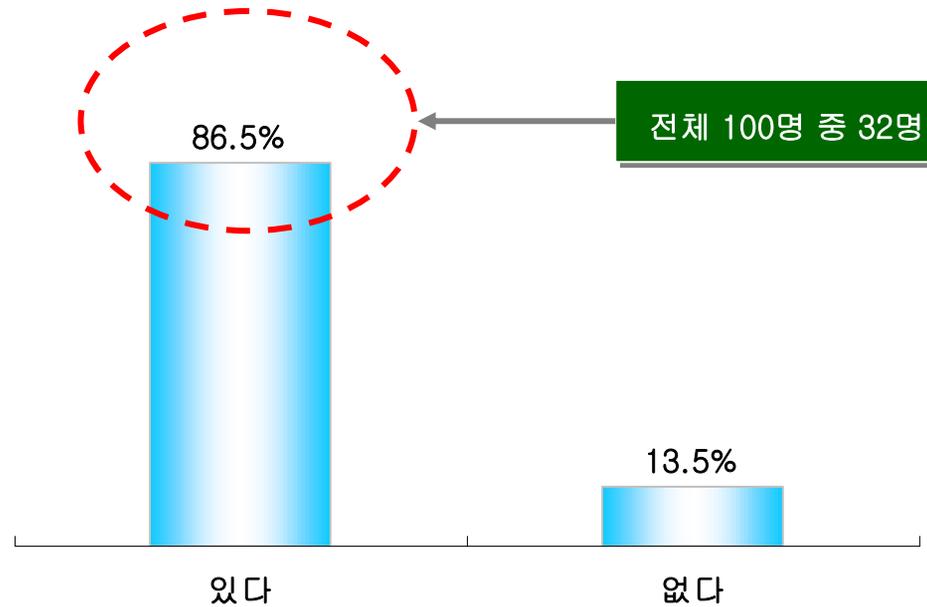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의 37%가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적이 있음
- 장애인에게 보험가입을 요청 받은 사람들 중 86.5%가 장애인대상 보험 취급 경험이 있음

장애인에게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여부



< Base = (100) / 단위 = % >

“예” 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여부 (37)



전체 100명 중 32명

< Base = () / 단위 = % >

3-1. 회사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율

- ✚ 교보생명, SK생명, 삼성화재 소속의 응답자들이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높은 반면, 삼성생명, 대한생명, Met Life, LG화재는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낮음
- ✚ 생명 보험회사가 화재 보험회사에 비해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이 낮음

	있다	없다
삼성생명 (10)	10.0%	90.0%
교보생명 (11)	54.5%	45.5%
대한생명 (11)	18.2%	81.8%
SK생명 (7)	57.1%	42.9%
AIG생명 (7)	42.9%	57.1%
Met Life (7)	28.6%	71.4%
ING생명 (9)	44.4%	55.6%
삼성화재 (11)	54.5%	45.5%
현대해상 (9)	33.3%	66.7%
동부화재 (10)	40.0%	60.0%
LG화재 (8)	25.0%	75.0%

생명 보험회사 (62)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없다 64.5%

화재 보험회사 (38)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없다 60.5%

< Base = () / 단위 = % >

3-2.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율

- ✦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은 큰 차이가 없음
- ✦ SK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는 계약담당자만이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았으며, 대한생명,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설계사의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중이 높음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율

	없다	있다
보험계약 담당자 (64)	62.5%	37.5%
보험설계사 (36)	63.9%	36.1%

회사별 담당 업무자의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비율 (37)

	계약담당자	보험설계사
삼성생명 (1)		100.0%
교보생명 (6)	50.0%	50.0%
대한생명 (2)		100.0%
SK생명 (4)	100.0%	
AIG생명 (3)	66.7%	33.3%
Met life (2)	100.0%	
ING생명 (4)	75.0%	25.0%
삼성화재 (6)	33.3%	66.7%
현대해상 (3)	100.0%	
동부화재 (4)	100.0%	
LG화재 (2)	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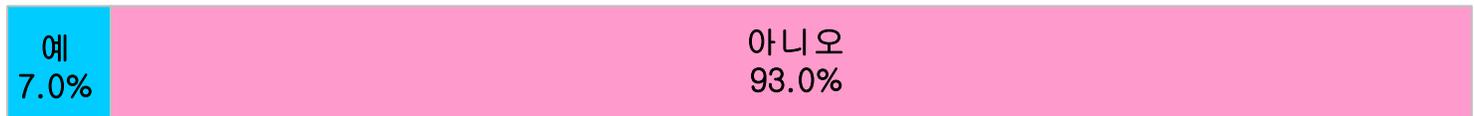
< Base = () / 단위 = % >

4. 장애인이 보험 가입 요청 시 거절 의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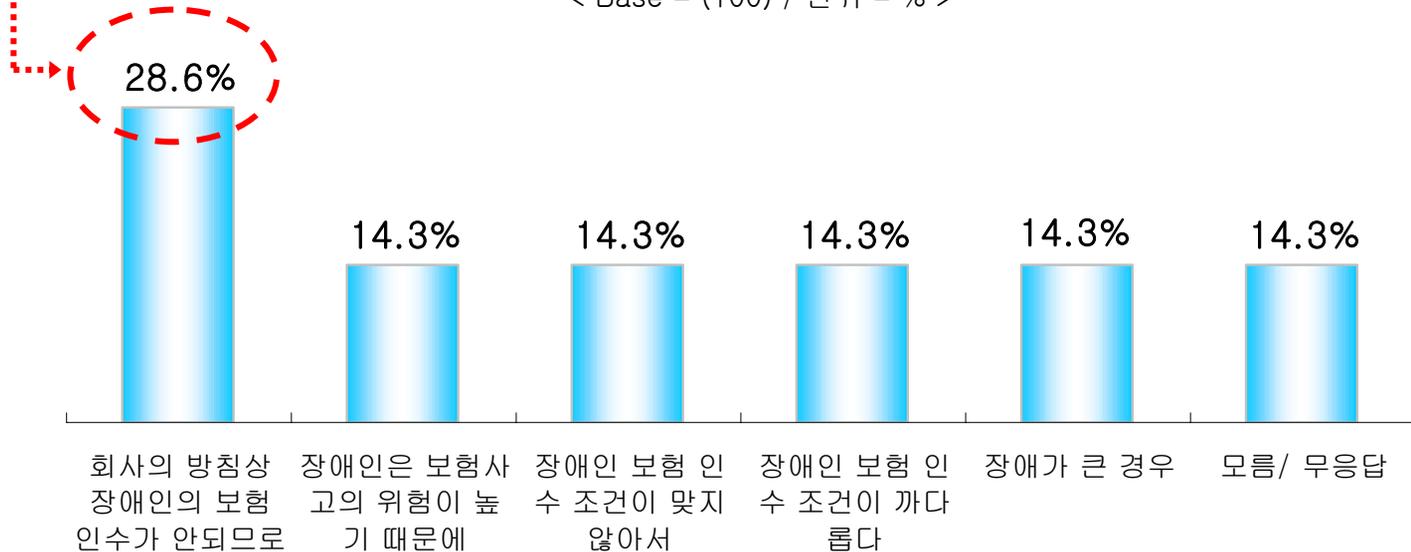
4. 장애인이 보험 가입 요청 시의 거절 여부 및 거절 의향 분석

- 장애인의 보험 가입 요청 시 7%만이 거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거절 요청 이유로는 회사의 방침으로 장애인 보험이 되지 않음이 가장 많음

전체
응답 비율



< Base = (100) / 단위 = % >



< Base = (7) / 단위 = % >

4-1.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에 따른 요청 시의 반응 여부

- 장애인에게 보험 가입을 실제로 요청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보험가입 요청 시 거절 하겠다는 응답이 높음

		장애인이 보험 가입 요청 시 거절 의향 여부	
		거절	거절하지 않음
장애인 에게 보험 가입 요 청 받은 경험	있다 (37)	10.8%	89.2%
	없다 (63)	4.8%	95.2%

< Base = () / 단위 = % >

4-2.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 여부에 따른 거절이유

- 장래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회사의 경영방침” 및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요청을 거절함
- 장래인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장애인의 보험인수 조건의 까다로움” 등의 이유로 가입요청을 거절 할 예정임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의 거절 이유 (4)

회사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많음	2명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	1명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맞지 않음	1명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의 거절 이유 (3)

장애인은 보험 인수 조건이 까다로움	1명
장애가 큰 경우만	1명
모름 / 무응답	1명

< Base = () / 단위 = 명/ 집단별 분석 시 Base가 적어 ‘명’수로 대체함 >

4-3. 회사별 장애인 보험 요청 시 거절 여부 및 이유

- 전체 11곳의 보험회사 중 LG화재, SK생명, AIG생명, 교보생명 소속 응답자 만이 장애인 보험 요청을 거절 하였음
- 회사내부에서도 응답자별로 장애인 보험 거절 이유는 일정하지 않음

교보생명 (1명)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맞지 않아서	1명
SK생명 (2명)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안 됨으로	1명
	장애인의 보험 인수 조건이 까다로움	1명
AIG생명 (1명)	모름/무응답	1명
LG화재 (3명)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안 됨으로	1명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늘기 때문에	1명
	장애가 큰 경우	1명

< Base = () / 단위 = 명/ 집단별 분석 시 Base가 적어 '명'수로 대체함 >

4-4. 담당 업무별 장애인 보험 요청 시 거절 여부 및 이유

- 보험 계약 담당자의 경우 “회사방침 과 인수 조건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장애인 보험 요청을 거부하는 반면, 보험 설계사의 경우 “장애인 보험 사고 위험률 과 인수 조건이 맞지 않음” 때문에 장애인 보험 요청을 거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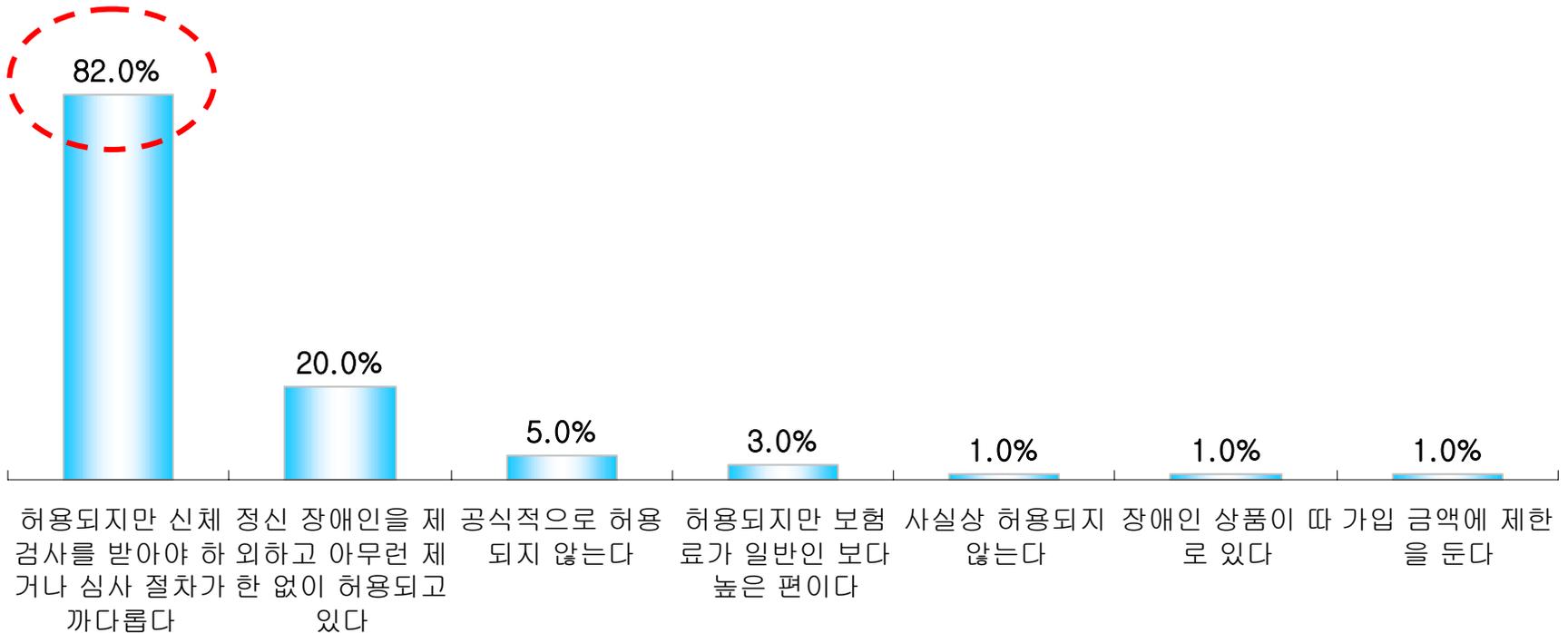
보험 계약 담당자 (4)	회사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안됨	2명
	장애인의 보험 인수 조건이 까다로움	1명
	장애가 큰 경우	1명
보험 설계사 (3)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	1명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맞지 않음	1명
	모름/ 무응답	1명

< Base = () / 단위 = 명/ 집단별 분석 시 Base가 적어 ‘명’수로 대체함 >

5. 장애인 보험 인수 허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

5. 장애인 보험 인수 허용에 대한 보험회사의 태도

- 대부분의 보험회사에서 장애인 보험에 대한 인수 조건은 허용되고 있으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심사 절차가 까다로움



< Base = (100) / 단위 = % / 중복응답 >

5-1. 보험 회사별 장애인 보험 인수 허용에 대한 태도

- 삼성생명, 대한생명, Met Life, 삼성화재, 동부화재, LG화재의 경우 장애인 보험이 허용은 되나 신체검사를 받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상대적으로 ING생명, 현대해상은 정신 장애가 없는 경우 장애인 보험을 허용하는 응답 비율이 높음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SK생명	AIG생명	Met Life	ING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10)	(11)	(11)	(7)	(7)	(7)	(9)	(11)	(9)	(10)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90.0	72.7	90.9	71.4	42.9	100.0	77.8	100.0	66.7	90.0
정신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20.0	18.2	18.2		28.6	14.3	44.4	18.2	33.3	10.0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8.6					11.1	10.0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 보다 높은 편이다						14.3	22.2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14.3					
장애인 상품이 따로 있다		9.1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둔다					14.3					

< Base = (100) / 단위 = % / 중복응답 >

5-2. 국, 내외계열 보험 회사에 따른 장애인 보험 인수에 대한 태도

- 장해인에 대한 보험 인수 허용 조건에 있어서 국내계열 생명 및 손해 보험회사는 장애인 보험에 대한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외국계 생명 보험회사의 경우 정신 장애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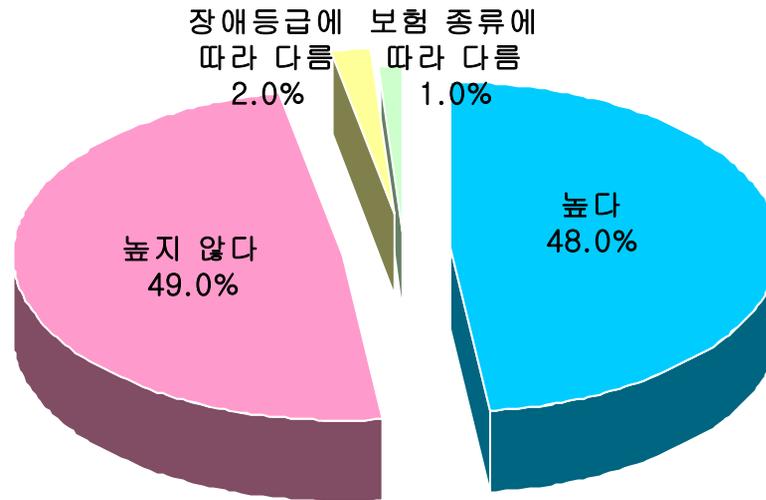
구분		정신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 보다 높은 편이다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장애인 상품이 따로 있다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둔다
국내계열 생명 보험사 (39)	삼성생명	15.4		82.1	5.1		2.6	
	교보생명							
	대한생명							
	SK생명							
외국계열 생명 보험사 (23)	AIG생명	30.4	13.0	73.9		4.3		4.3
	Met Life							
	ING생명							
국내계열 손해 보험사 (38)	삼성화재	18.4		86.8	7.9			
	현대해상							
	동부화재							
	LG화재							

< Base = (100) / 단위 = % / 중복응답 >

6. 일반인 대비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인식도

6.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의 보험사고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차이가 없음



< Base = (100) / 단위 = % >

6-1.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 사고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반면, 장애인 보험 취급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 사고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음

		장애인 보험 취급 유무	
		있다 (45)	없다 (55)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 사고확률	높다	53.5%	43.6%
	높지않다	42.2%	54.5%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4.4%	-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	1.8%

< Base = () / 단위 = % >

6-2. 장애인의 보험사고 확률에 따른 장애인 보험 가입의 용이성

- 장해인의 사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험 가입이 일반인에 비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 반면, 오히려 사고확률이 높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험가입의 어렵다고 생각함
- 사고확률이 높지 않은데도 어려운 이유는 일반인에 비해 가입절차의 까다로움이 높기 때문임(74.2%)

		일반인에 대비 되는 장애인 보험 용이성	
		똑같다 (46)	어렵다 (54)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 사고확률	높다	60.9%	37.0%
	높지않다	39.1%	57.4%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	3.7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	1.9%

사고 확률이 높지 않은 데도 가입이 어려운 이유 (31)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 보다 절차가 까다로움	74.2%
가입자체가 어려움	12.9%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혜택이 낮음	6.5%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보험료가 비쌌	3.2%
특약부분에 제약이 많음	3.2%

< Base = () / 단위 = % >

6-3. 회사별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 교보생명, 대한생명, 현대해상 소속의 응답자들은 장애인 보험 사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SK생명 Met life, ING생명은 장애인 보험사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
- 장애인 보험 사고 확률에 있어서 생명 보험회사 보다 화재 보험회사에서 사고확률이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라 생각함

	높다	높지않다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삼성생명 (10)	60.0%	40.0%	-	-
교보생명 (11)	72.7%	27.3%	-	-
대한생명 (11)	72.7%	27.3%	-	-
SK생명 (7)	14.3%	71.4%	-	14.3%
AIG생명 (7)	28.6%	57.1%	14.3%	-
Met life (7)	14.3%	85.7%	-	-
ING생명 (9)	11.1%	77.8%	11.1%	-
삼성화재 (11)	45.5%	54.5%	-	-
현대해상 (9)	77.8%	22.2%	-	-
동부화재 (10)	50.0%	50.0%	-	-
LG화재 (8)	50.0%	50.0%	-	-

생명 보험회사 (62)

사고 확률이 높다 43.5%

화재 보험회사 (38)

사고 확률이 높다 55.3%

< Base = () / 단위 = % >

6-4. 담당 업무별 장애인의 보험 사고 확률

- ☞ 보험 계약 담당자의 경우 장애인 보험사고 확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사고확률이 높다고 생각함

	높다	높지않다	장애등급에 따라 다름	보험종류에 따라 다름
보험계약 담당자 (64)	46.9%	50.0%	1.6%	1.6%
보험 설계사 (36)	50.0%	47.2%	2.8%	-

< Base = () / 단위 = % >



종합적인 결론

종합적인 결론

보험회사에 종사하는 보험 계약 담당자와 보험 설계사들은 일반인에 대비되는 장애인의 보험사고 확률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험 가입에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한 주 이유로는 장애인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실무 담당자들이 장애인 보험 가입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

- ✓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보험 계약 담당자와 보험 설계사의 과반수(55.0%) 이상이 장애인 관련 보험 상품을 취급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보생명 종사자들은 장애인 대상 보험을 취급한 경험이 많은 반면, LG화재, SK생명, 삼성생명 종사자들은 취급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54.0%)이상은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 보험 가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는 가입 절차의 까다로움 (77.8%)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장애인 대상 보험 취급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입자체가 어렵다 (19.4%)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 전체 응답자의 37%는 장애인들로 부터 보험 가입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가입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 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 보다 거절의향이 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종합적인 결론

- ✓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 인수를 허용을 하고 있기는 하나 신체검사 등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남
- ✓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에 있어서 국내 계열 생명 및 손해 보험 회사들이 외국계 생명 보험 회사에 비해 장애인 보험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남
- ✓ 일반인이 대비되는 장애인의 보험사고 확률은 차이가 없다고 (49.0%) 생각하고 있으나 장애인 보험을 취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미경험자에 비해 장애인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인식 (53.5%)



교차 분석표



빈도 분석표



전화조사 설문지

저희 **CRC**는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완벽한 팀웍과 프로정신으로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응답자 profile : 보험에 대한 전화 조사]

	(base)	%
전체.....	(100)	100.0
◆ 소속 보험사		
삼성생명.....	(10)	10.0
교보생명.....	(11)	11.0
대한생명.....	(11)	11.0
SK생명.....	(7)	7.0
AIG생명.....	(7)	7.0
Met Life.....	(7)	7.0
ING생명.....	(9)	9.0
삼성화재.....	(11)	11.0
현대해상.....	(9)	9.0
동부화재.....	(10)	10.0
LG화재.....	(8)	8.0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생명보험사.....	(62)	62.0
화재보험사.....	(38)	38.0
◆ 담당 업무		
보험계약담당자.....	(64)	64.0
보험설계사.....	(36)	36.0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취급.....	(45)	45.0
비취급.....	(55)	55.0

[응답자 profile : 응답자 소속 보험사]

	◆ 전체	소속 보험사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 담당 업무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소속 보험사																		
삼성 생명.....	10.0	100.0	.0	.0	.0	.0	.0	.0	.0	.0	.0	.0	16.1	.0	3.1	22.2	6.7	12.7
교보 생명.....	11.0	.0	100.0	.0	.0	.0	.0	.0	.0	.0	.0	.0	17.7	.0	7.8	16.7	17.8	5.5
대한 생명.....	11.0	.0	.0	100.0	.0	.0	.0	.0	.0	.0	.0	.0	17.7	.0	7.8	16.7	13.3	9.1
SK 생명.....	7.0	.0	.0	.0	100.0	.0	.0	.0	.0	.0	.0	.0	11.3	.0	9.4	2.8	4.4	9.1
AIG 생명.....	7.0	.0	.0	.0	.0	100.0	.0	.0	.0	.0	.0	.0	11.3	.0	6.3	8.3	6.7	7.3
Met Life.....	7.0	.0	.0	.0	.0	.0	100.0	.0	.0	.0	.0	.0	11.3	.0	10.9	.0	6.7	7.3
ING 생명.....	9.0	.0	.0	.0	.0	.0	.0	100.0	.0	.0	.0	.0	14.5	.0	9.4	8.3	8.9	9.1
삼성 화재.....	11.0	.0	.0	.0	.0	.0	.0	.0	100.0	.0	.0	.0	.0	28.9	9.4	13.9	13.3	9.1
현대 해상.....	9.0	.0	.0	.0	.0	.0	.0	.0	.0	100.0	.0	.0	.0	23.7	12.5	2.8	8.9	9.1
동부 화재.....	10.0	.0	.0	.0	.0	.0	.0	.0	.0	.0	100.0	.0	.0	26.3	12.5	5.6	11.1	9.1
LG 화재.....	8.0	.0	.0	.0	.0	.0	.0	.0	.0	.0	.0	100.0	.0	21.1	10.9	2.8	2.2	12.7

중앙리서치(주)

[응답자 profile : 응답자 담당 업무]

	◆ 전체	◆ 소속 보험사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 담당 업무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담당 업무																		
보험 계약 담당자.....	64.0	20.0	45.5	45.5	85.7	57.1	100.0	66.7	54.5	88.9	80.0	87.5	56.5	76.3	100.0	.0	62.2	65.5
보험 설계사.....	36.0	80.0	54.5	54.5	14.3	42.9	.0	33.3	45.5	11.1	20.0	12.5	43.5	23.7	.0	100.0	37.8	34.5

중앙리서치(주)

[문 1 : 귀하께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업무를 취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전체	◆ 소속 보험사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 담당 업무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장애인 대상 보험업무 취급 여부																		
예.....	45.0	30.0	72.7	54.5	28.6	42.9	42.9	44.4	54.5	44.4	50.0	12.5	46.8	42.1	43.8	47.2	100.0	.0
아니오.....	55.0	70.0	27.3	45.5	71.4	57.1	57.1	55.6	45.5	55.6	50.0	87.5	53.2	57.9	56.3	52.8	.0	100.0

중앙리서치(주)

[문 2 :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할때 일반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어떤가요]

전체	소속 보험사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담당 업무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장애인 보험 가입시 일반인 보다 어렵다.....	54.0	40.0	45.5	27.3	71.4	71.4	71.4	66.7	63.6	55.6	50.0	50.0	53.2	55.3	53.1	55.6	51.1	56.4
일반인과 똑같다.....	46.0	60.0	54.5	72.7	28.6	28.6	28.6	33.3	36.4	44.4	50.0	50.0	46.8	44.7	46.9	44.4	48.9	43.6

중앙리서치(주)

[문 2-1 :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 (중복 응답)]

전체	소속 보험사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담당 업무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54)	(4)	(5)	(3)	(5)	(5)	(6)	(7)	(5)	(5)	(4)	(33)	(21)	(34)	(20)	(23)	(31)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77.8	100.0	80.0	66.7	60.0	40.0	60.0	100.0	85.7	100.0	80.0	75.0	72.7	85.7	79.4	75.0	82.6	74.2
가입 자체가 어렵다.....	14.8	.0	.0	33.3	40.0	20.0	.0	.0	28.6	.0	20.0	25.0	12.1	19.0	11.8	20.0	8.7	19.4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5.6	25.0	.0	.0	.0	.0	20.0	16.7	.0	.0	.0	.0	9.1	.0	8.8	.0	4.3	6.5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혜택이 낮다.....	5.6	.0	20.0	.0	.0	40.0	.0	.0	.0	.0	.0	.0	9.1	.0	2.9	10.0	8.7	3.2
특약 부분에 제약이 많다.....	1.9	.0	.0	.0	.0	.0	20.0	.0	.0	.0	.0	.0	3.0	.0	2.9	.0	.0	3.2

BASE : 문 2의 1번 응답자

중앙리서치(주)

[문 3 : 장애인이 귀하에게 보험 가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전체	소속 보험사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담당 업무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장애인이 보험 가입 요청 예.....	37.0	10.0	54.5	18.2	57.1	42.9	28.6	44.4	54.5	33.3	40.0	25.0	35.5	39.5	37.5	36.1	71.1	9.1
아니오.....	63.0	90.0	45.5	81.8	42.9	57.1	71.4	55.6	45.5	66.7	60.0	75.0	64.5	60.5	62.5	63.9	28.9	90.9

중앙리서치(주)

[문 4 :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요청시 귀하께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시는 편입니까]

	◆ 전체	◆ 소속 보험사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 담당 업무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시 보험 가입																		
예.....	7.0	.0	9.1	.0	28.6	14.3	.0	.0	.0	.0	.0	37.5	6.5	7.9	6.3	8.3	6.7	7.3
아니오.....	93.0	100.0	90.9	100.0	71.4	85.7	100.0	100.0	100.0	100.0	100.0	62.5	93.5	92.1	93.8	91.7	93.3	92.7

중앙리서치(주)

[문 4-1 :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전체 ◆	◆ 소속 보험사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 담당 업무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교보 생명	SK 생명	AIG 생명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7)	(1)	(2)	(1)	(3)	(4)	(3)	(4)	(3)	(3)	(4)
거절 이유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 인수가 안되므로.....	28.6	.0	50.0	.0	33.3	25.0	33.3	50.0	.0	33.3	25.0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14.3	.0	.0	.0	33.3	.0	33.3	.0	33.3	.0	25.0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맞지 않아서.....	14.3	100.0	.0	.0	.0	25.0	.0	.0	33.3	33.3	.0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까다롭다.....	14.3	.0	50.0	.0	.0	25.0	.0	25.0	.0	33.3	.0
장애가 큰 경우.....	14.3	.0	.0	.0	33.3	.0	33.3	25.0	.0	.0	25.0
모름/ 무응답.....	14.3	.0	.0	100.0	.0	25.0	.0	.0	33.3	.0	25.0

중앙리서치(주)

[문 5 : 귀하의 회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인수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중복 응답)]

전체	소속 보험사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담당 업무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82.0	90.0	72.7	90.9	71.4	42.9	100.0	77.8	100.0	66.7	90.0	87.5	79.0	86.8	81.3	83.3	82.2	81.8
정신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20.0	20.0	18.2	18.2	.0	28.6	14.3	44.4	18.2	33.3	10.0	12.5	21.0	18.4	25.0	11.1	22.2	18.2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5.0	.0	.0	.0	28.6	.0	.0	.0	.0	11.1	10.0	12.5	3.2	7.9	7.8	.0	4.4	5.5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3.0	.0	.0	.0	.0	.0	14.3	22.2	.0	.0	.0	.0	4.8	.0	4.7	.0	2.2	3.6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1.0	.0	.0	.0	.0	14.3	.0	.0	.0	.0	.0	.0	1.6	.0	.0	2.8	2.2	.0
장애인 상품이 따로 있다.....	1.0	.0	9.1	.0	.0	.0	.0	.0	.0	.0	.0	.0	1.6	.0	.0	2.8	2.2	.0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둔다.....	1.0	.0	.0	.0	.0	14.3	.0	.0	.0	.0	.0	.0	1.6	.0	1.6	.0	2.2	.0

중앙리서치(주)

[문 6 :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애인의 경우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소속 보험사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담당 업무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삼성 생명	교보 생명	대한 생명	SK 생명	AIG 생명	Met Life	ING 생명	삼성 화재	현대 해상	동부 화재	LG 화재	생명 보험사	화재 보험사	보험 계약 담당자	보험 설계사	취급	비취급	
사례수.....	(100)	(10)	(11)	(11)	(7)	(7)	(7)	(9)	(11)	(9)	(10)	(8)	(62)	(38)	(64)	(36)	(45)	(55)
장애인의 경우 보험사고의 확률																		
그렇다.....	48.0	60.0	72.7	72.7	14.3	28.6	14.3	11.1	45.5	77.8	50.0	50.0	43.5	55.3	46.9	50.0	53.3	43.6
그렇지 않다.....	49.0	40.0	27.3	27.3	71.4	57.1	85.7	77.8	54.5	22.2	50.0	50.0	51.6	44.7	50.0	47.2	42.2	54.5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다.....	2.0	.0	.0	.0	.0	14.3	.0	11.1	.0	.0	.0	.0	3.2	.0	1.6	2.8	4.4	.0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0	.0	.0	.0	14.3	.0	.0	.0	.0	.0	.0	.0	1.6	.0	1.6	.0	.0	1.8

중앙리서치(주)

CARD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1	100	100.0	100.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5 소속 보험사

Value Label	Value	Frequency	Valid Percent	Cum Percent	Percent
삼성 생명	1	10	10.0	10.0	10.0
교보 생명	2	11	11.0	11.0	21.0
대한 생명	3	11	11.0	11.0	32.0
SK 생명	4	7	7.0	7.0	39.0
AIG 생명	5	7	7.0	7.0	46.0
Met Life	6	7	7.0	7.0	53.0
ING 생명	7	9	9.0	9.0	62.0
삼성 화재	8	11	11.0	11.0	73.0
현대 해상	9	9	9.0	9.0	82.0
동부 화재	10	10	10.0	10.0	92.0
LG 화재	11	8	8.0	8.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7 담당 업무

Value Label	Value	Frequency	Valid Percent	Cum Percent	Percent
보험 계약 담당자	1	64	64.0	64.0	64.0
보험 설계사	2	36	36.0	36.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8 장애인 대상 보험업무 취급 여부

Value Label	Value	Frequency	Valid Percent	Cum Percent	Percent
예	1	45	45.0	45.0	45.0
아니오	2	55	55.0	55.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9 장애인 보험 가입시 형평성 여부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일반일 보다 어렵다	1	54	54.0	54.0	54.0
일반인과 똑같다	2	46	46.0	46.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10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가입 자체가 어렵다	1	8	8.0	14.8	14.8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2	41	41.0	75.9	90.7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	3	1	1.0	1.9	92.6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에 비해 혜택이 낮다	4	3	3.0	5.6	98.1
특약 부분에 제약이 많다	5	1	1.0	1.9	100.0
.	.	46	46.0	Missing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54	Missing cases	46		

A11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2	1	1.0	33.3	33.3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3	2	2.0	66.7	100.0
.	.	97	97.0	Missing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3	Missing cases	97		

A12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예	1	37	37.0	37.0	37.0
아니오	2	63	63.0	63.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13 장애인 보험 가입 요청시 보험 가입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예	1	7	7.0	7.0	7.0
아니오	2	93	93.0	93.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14 거절 이유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 보험인수가 안되므로	1	2	2.0	28.6	28.6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기때문에	2	1	1.0	14.3	42.9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맞지않아서	3	1	1.0	14.3	57.1
장애인 보험 인수 조건이 까다롭다	4	1	1.0	14.3	71.4
장애가 큰 경우	5	1	1.0	14.3	85.7
모름/ 무응답	9	1	1.0	14.3	100.0
.	.	93	93.0	Missing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7	Missing cases	93		

A15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정신 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1	20	20.0	20.0	20.0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2	1	1.0	1.0	21.0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절차가 까다롭다	3	72	72.0	72.0	93.0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4	4.0	4.0	97.0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5	1	1.0	1.0	98.0
장애인 상품이 따로 있다	6	1	1.0	1.0	99.0
가입 금액에 제한을 둔다	7	1	1.0	1.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A16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 보다 높은 편이다	2	2	2.0	18.2	18.2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 절차가 까다롭다	3	8	8.0	72.7	90.9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4	1	1.0	9.1	100.0
	.	89	89.0	Missing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1	Missing cases	89		

A17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심사절차가 까다롭다	3	2	2.0	100.0	100.0
	.	98	98.0	Missing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2	Missing cases	98		

A18 장애인인 경우 보험사건의 확률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그렇다	1	48	48.0	48.0	48.0
그렇지 않다	2	49	49.0	49.0	97.0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다	3	2	2.0	2.0	99.0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4	1	1.0	1.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XBASE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00	100	100.0	100.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DA5 ◆ 소속 보험사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삼성 생명	1.00	10	10.0	10.0	10.0
교보 생명	2.00	11	11.0	11.0	21.0
대한 생명	3.00	11	11.0	11.0	32.0
SK 생명	4.00	7	7.0	7.0	39.0
AIG 생명	5.00	7	7.0	7.0	46.0
Met Life	6.00	7	7.0	7.0	53.0
ING 생명	7.00	9	9.0	9.0	62.0
삼성 화재	8.00	11	11.0	11.0	73.0
현대 해상	9.00	9	9.0	9.0	82.0
동부 화재	10.00	10	10.0	10.0	92.0
LG 화재	11.00	8	8.0	8.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DDA5 ◆ 생보사 화재보험 구분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생명 보험사	1.00	62	62.0	62.0	62.0
화재 보험사	2.00	38	38.0	38.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DA7 ◆ 담당 업무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보험 계약 담당자	1.00	64	64.0	64.0	64.0
보험 설계사	2.00	36	36.0	36.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DA8 ◆ 장애인 보험업무 취급 여부

Value Label	Value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 Percent
취급	1.00	45	45.0	45.0	45.0
비취급	2.00	55	55.0	55.0	100.0
Total		100	100.0	100.0	
Valid cases	100	Missing cases	0		

보험에 대한 전화조사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서치 전문 기관인 중앙리서치의 조사담당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답하신 자료는 통계 처리에만 이용될 뿐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자 소속보험사 : _____ 성명: (☎ _____)
 ※ 응답자 담당업무 : ① 보험계약담당자 ② 보험설계사

1. 귀하께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업무를 취급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장애인이 보험가입을 할 때에는 일반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는 어떤가요?
 ① 일반인 보다 어렵다 ② 일반인과 똑같다(어렵지 않다) (☞ 문3]으로)
 - 2.1. (“①어렵다”고 응답한 사람만) 어렵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가요?
 ① 가입 자체가 어렵다
 ②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절차가 까다롭다
 ③ 가입은 가능하지만, 일반인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3. 장애인이 귀하에게 보험가입을 요청한 적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5]로)

4. 만일, 장애인이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을 때, 귀하께서는 보험 가입을 거절하시는 편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5]로)
 - 4.1. (“①예”인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관식으로 물어보되, 잘 답변을 못하는 경우에만 아래의 예를 들어줄 것>
 ① 회사의 방침상 장애인의 보험인수가 안되므로
 ② 장애인은 보험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③ 기타_____

5. 귀하의 회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 인수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여러개의 답이 가능하므로, 하나의 답을 말해도 다음 답을 이야기해줄 것)
 ①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다
 ② 허용되지만, 보험료가 일반인보다 높은 편이다
 ③ 허용되지만, 신체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거나 심사절차가 까다롭다
 ④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다

6.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애인의 경우, 보험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접원 성명		면접원 연락처	
면접 일시	2002년 11월 일 __시 __분	감독자 확인	